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경 영 학 박 사 학 위 청 구 논 문

세무조사 대상기업의 특성과 효과



2018년 8월

부 경 대 학 교 대 학 원

경영컨설팅협동과정

문 상 현

경 영 학 박 사 학 위 논 문

세무조사 대상기업의 특성과 효과

지도교수 김 확 열

이 논문을 경영학 박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8년 8월

부 경 대 학 교 대 학 원

경영컨설팅협동과정

문 상 현

문상현의 경영학 박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8년 8월

위 원 장 경영학박사 정 석 우 (인)

위 원 경영학박사 최 미 화 (인)

위 원 경영학박사 이 진 수 (인)

위 원 경영학박사 조 정 은 (인)

위 원 경영학박사 김 학 열 (인)

< 목 차 >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제 2 절 연구방법 및 논문의 구성	5
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8
제 1 절 세무조사	8
제 2 절 선행연구	13
제 3 장 연구설계	33
제 1 절 연구가설	33
제 2 절 연구모형과 변수의 측정	38
제 3 절 표본선정	54
제 4 장 실증분석	58
제 1 절 기술통계량과 상관관계분석	58
제 2 절 세무조사기업의 재무적 특성	63
제 3 절 세무조사기업의 기업지배구조 특성	67
제 4 절 세무조사기업의 세무조사전후의 이익조정차이	71
제 5 절 세무조사기업의 세무조사전후의 조세회피차이	73
제 5 장 결론	75
참 고 문 헌	80

< 표 목 차 >

[표 1] 연도별 국세 추정금 공시현황	12
[표 2] 연도별 법인세율 및 추정과세소득	52
[표 3] 표본기업의 선정과정	56
[표 4] 표본의 산업별 분포	56
[표 5] 기술통계량	58
[표 6] 상관관계분석	61
[표 7] 세무조사기업 재무적 특성의 t-검증결과	64
[표 8] 세무조사기업 재무적 특성의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결과	66
[표 9] 세무조사기업 기업지배구조의 t-검증결과	67
[표10] 세무조사기업 기업지배구조의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결과	69
[표10-1] 외부 기업지배구조에 따른 재무적 특성의 차이 로짓분석결과 ..	69
[표10-2] 내부 기업지배구조에 따른 재무적 특성의 차이 로짓분석결과 ..	71
[표11] 재량적 발생액의 t-검증결과	72
[표12] 재량적 발생액의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73
[표13] 조세회피성향의 t-검증결과	73
[표14] 조세회피추정치에의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74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companies subject to tax investigation

Moon Sang Hyun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The Graduate School,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tax investigation shall be conducted on the questions to be investigated or questions to be examined in each tax law, the tax punishment law, and the taxpayers or those who are deemed to have transactions with taxpayers. The tax investigation refers to carrying out by inquiry plan as an act to question, examine, investigate book, documents so on. Tax evasion acts directly against national finances. And it causes the national welfare spending to decrease, which is a social problem of the state. And the tax investigation firm has different characteristics from other companies.

This study categorizes the characteristics of tax avoidance measures and the financial characteristics of tax investigation companies. The purpose of the analysis is to provide information that enables investors, creditors, credit rating agencies, and nations to make rational decisions by analyzing the difference

between tax investigation companies and non-tax investigation companies. Thus, by studying various characteristics, it is analysing tax evasion tendency and tax evasion means.

The analysis method of this study compares tax survey companies with non-tax survey companies through t-test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It also examines the difference between before and after the tax investigation of the tax investigation company.

First, we examine whether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financial characteristics and corporate governance between tax investigation companies and non - tax investigation companies. Second, we examine whether the tax avoidance measures of the tax investigation companie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fter the tax audit period and during the tax audit.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variables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tax investigation firm were the 7 variables: the quick ratio, the gross profit margin, the short - term borrowing ratio, the debt ratio, the current debt ratio, the total asset turnover rate and the inventory turnover rate.

Second, BIG4, external directors ratio, tax professionals' variables are significant in the characteristics of corporate governance of tax investigation companies and non - tax investigation companies. Third, discretionary accruals increased after tax audit compared to tax audit year. The reason for this is that executives adjust profit by judging that tax audit and taxpayer 's interest is low for a certain period after tax audit. Fourth, the measure of tax avoidance showed the same result as the discretionary accrual.

Companies that received periodic tax audit were excluded from the sample. In selecting the responding company, it may be a company that can be subject to tax investigation later due to the fact that the duration of the national tax is not completed. And it could be that the tax evasion act has not been detected at present. There is a possibility that among the responding companies a tax investigation company is included.

There is no general definition of tax avoidance measures in the selection. There is a limit that there are no measures that can accurately capture tax avoidance measures.

Despite these limitations, this study classified the financial characteristics of firms and the characteristics of corporate governance, and then analyzed the difference between the firms surveyed and non - surveyed firms. this paper analyzed the differences of discretionary accruals and tax avoidance measure(BTD) between the tax audit period and after tax audit. Unlike previous studies, various measurement variables were included by region, type, and structure. Thus, the result of the paper can provide investors, creditors, credit rating agencies, and taxpayers with basic decision making information. Companies also understand the behavior of tax planning and tax investigation in the tax strategy and tax administration through the result of the paper. Therefore, it is expected that it will be able to provide rationale to contribute to efficient tax administration. In addition, the results of analysis by each governance structure are expected to provide a basic base for analyzing the investment propensity of foreign investors and large shareholders.

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세무조사”라 함은 각 세법에 규정하는 질문조사권 또는 질문검사권 및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하여 조사공무원이 납세자 또는 그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질문하고,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는 행위로서 조사계획에 의해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¹⁾ 그리고 이 규정에서는 세무조사를 일반세무조사와 조세범칙조사로 구분하고 있다. 즉, 세무조사는 세무공무원이 납세의무자 등을 상대로, 납세의무자가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 및 납부 하였는지를 질문하거나 장부 및 서류 등을 검사·조사·확인하는 일련의 모든 행위를 말한다.

특히, 전형수(2002)는 세무조사를 조세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 또는 자료를 수집하는 행정작용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세무조사는 행정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행정상 수행하는 조사의 일종이므로 대부분의 경우 납세자의 재산권과 직결된다. 따라서 세무조사는 행정 조사 중 그 중요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점에서 조사대상자가 법인사업자인 경우 이해관계인의 대상도 다양하며 숫자도 많기 때문에 조사결과에 대한 파급효과는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세무조사의 주된 목적은 먼저 납세자의 탈세여부를 조사하는 것이다. 또한 세무행정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증을 하는 것도 세무조사의 목적이 될 수 있다.

1) 2007. 7. 27. 공포된 국세청 훈령 제1661호인 ‘조사사무 처리규정’ 제2조 제1호의 규정

탈세행위는 국가재정에 영향을 주어 국민후생지출을 감소시키고 국가경제의 효율성을 저해시킨다. 특히, 탈세의 영향은 소득재분배와 자원배분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야기 시키고, 불공정한 조세부담을 초래한다. 김철영(2001)은 납세자의 탈세선택과 관련한 연구에서 탈세행위를 유발시키는 유인이나 동기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세법구조상의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탈세유형의 사례로는 수입금액(매출, 장려금) 누락하는 경우와 실제거래하지 않은 물품을 매입한 것으로 처리하여 비용을 과다 계상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실제 지급하지 않은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와 사업자의 개인적 지출비용을 사업과 관련한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다. 이외에도 자산을 비용으로 계상하는 경우 및 손익 귀속연도를 임의로 조작하여 세금 납부를 지연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세무조사는 탈세상황을 추적하거나 목격하는 경우 납세자의 성실한 세금의 신고와 납부를 유도하기 위하여 납세상황을 면밀히 검토·조사하기 위하여 세무공무원이 검사·조사·확인하는 일련의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한편, 세무조사기업의 경우 세무조사를 받은 당해 연도에는 세무조사 적발의 위험이 없으므로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분식행위를 할 유인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납세의무자가 세무조사 이후 재조사를 받지 않을 것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신영식·김용수·전규안(2017)의 연구에 따르면, 세무조사연도의 조세회피 수준이 세무조사 전후 3개년의 조세회피 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특히, 유가증권상장기업의 경우 세무조사연도의 조세회피가 세무조사 이전보다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세무조사연도와 세무조사 이후 연도 간에는 조세회피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코스닥 상장기업의 경우 세무조사연도의 조세회피가 세무조사 직전 연도의 조세회

피보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유가증권상장기업의 결과와 일관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코스닥상장기업의 경우 세무조사이후 연도에는 세무조사 연도보다 조세회피의 수준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주주1인 지분율이 높은 경우 세무조사연도와 세무조사연도 전후의 조세회피 수준은 대부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대주주 1인 지분율이 낮은 경우 세무조사 이전 연도보다 세무조사 연도의 조세회피 수준이 증가하고, 이 수준은 세무조사 이후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지분율이 높은 경우 세무조사연도와 세무조사연도 전후의 조세회피 수준은 대부분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외국인 지분율이 낮은 경우 세무조사 이전 연도보다 세무조사연도의 조세회피 수준이 증가하고, 이 수준은 세무조사 2년 이후에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문현(2007)의 연구에서는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 전후 이익조정 여부에 대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세무조사 이전 세무조사기업의 이익조정(재량적 유동발생액)은 유의적인 양(+)의 값으로 나타났으며,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기업의 이익조정은 '0'과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조사 이전 세무조사기업의 이익조정은 조사된 3기간 동안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세무조사 이후 기간에는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기업처럼 이익조정이 '0'과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기업특성을 고려한 유동발생액 설명 모형에서는 세무조사기업과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기업 사이에 유의적인 기업특성변수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문현(2007)의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세무조사 이전에는 이익조정이 증가하며, 세무조사 이후에는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기업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세무조사는 이익조정과 관련이 있고, 세무조사

전후로 이익조정 양상이 달라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김문현(2007)은 세무조사의 경우 과세소득을 조정한 결과이고, 이익조정은 과세소득과 회계이익의 차이를 감소시키기 위한 기업의 선택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이는 세무조사 기업의 경우 세무조사 기간과 세무조사 이후 조세회피성향이 강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지금까지 세무조사기업의 특성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세무조사 기업의 세무조사 전후의 과세소득의 차이에 관한 연구(정달성 · 홍정화, 2013; 김진태 · 배수진, 2016; 노현섭 · 이종국, 2006; 김진태, 2016; 심충진, 2008), 세무조사 기업의 이익조정에 관한 연구(이윤상, 2012; 심호석 · 강창수, 2006; 김문현, 2007; 임진윤, 2006), 세무조사 적발확률과 세무대리인의 조세회피에 관한 연구(홍정화 · 고병숙, 2007), 탈세 대처에 대한 정책수단에 관한 연구(김윤찬, 2005; 정진오 · 정지선, 2009; 김진섭, 2008; 심태섭, 2011), 조세회피 측정치(이후 'BTD'라고 칭함)(최현섭, 2012; 심호석 · 박재환 · 강창수, 2009; 박상섭, 2012; 정성진 · 유상열, 2011; 심충진 · 이준규 · 김진태, 2013; 박상섭, 2012; 신영식 · 김용수 · 전규안, 2017)와 관련된 연구가 있다. 이외에도 기업지배구조와 관련성 연구(곽재우 · 안형태, 2016) 및 세무조사 기업의 경영특성에 관한 연구(정준희 · 장지인 · 양대천, 2013; 나철호 · 고종권 · 김임현, 2016; 정운오 · 전병욱, 2010; 심호석 · 김창수, 2008; 권순창 · 강영욱 · 김창훈 · 김정환, 2009)의 연구가 있다.

본 연구는 세무조사기업의 재무적 특성과 기업지배구조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투자자, 채권자, 신용평가기관, 국가 등에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세무조사 대상기업의 여러 특성을 연구함으로써 기업의 탈세 성향과 효과를 연구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세무조사 기업과 비세무조사기업을 비교하여 특성을 살펴보는 것과 세무조사기업의 세무조사 전과 세무조사 후의 차이를 t-검증과 로짓 회귀

분석 등을 이용하여 차이를 검증하여 세무조사의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세무조사 기업과 비세무조사기업의 재무적 특성의 차이와 기업지배구조를 t-검증과 로짓 회귀분석을 통해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다. 재무적 특성은 유동성 비율, 수익성 비율, 레버리지 비율, 활동성 비율로 구분한다. 기업지배구조는 내부지배구조인 1대 주주 지분율, 대주주 지분율,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 세무전문인 확보 여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외부지배구조는 외국인 지분율, BIG 4, 사외이사 비율로 나누었다.

둘째, 세무조사 기업의 조세회피 측정치를 이용하여 세무조사기간과 세무조사 이후에 차이를 t-검증과 로짓 회귀분석을 통해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다. 조세회피 측정치는 재량적 발생액(DA)와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BTD)(전규안 · 김철환, 2008)로 나누어 검증 하고자 한다.

즉, 본 연구는 세무조사 기업과 비 세무조사 기업 간의 재무적 특성의 차이분석[가설 1] 및 기업지배구조의 차이분석[가설 2]을 수행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세무조사기간과 세무조사이후의 재량적 발생액[가설 3] 및 조세회피 성향[가설 4]을 검증할 것이다.

제2절 연구방법 및 논문의 구성

본 연구의 분석과 관련하여 필요한 재무적 자료 및 기업 특성과 관련한 자료 등은 (주)나이스신용평가에서 제공하는 KIS-VALUE 및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의하여 수집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한 자료는 정량적 데이터로써 모형을 도출함에 있어 종속변수인 로짓 이분형 변수(binary variable)를 제외한 독립변수와 통제변수는 KIS-VALUE 을 통하여 구하였다. 이러한 독립변수와 통제변수의 구성에 있어서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

기 위한 조건은 충족하였다. 본 연구는 세무조사 기업의 기업특성을 파악하여 세무조사 기업의 특성과 세무조사 선정대상과 관련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진희 · 정재욱(2006)은 기업의 재무적 특성과 조세회피간의 연구에서 Desai와 Dharmapala (2006)이 제안한 방법으로 조세회피행위를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총자산변화율, 법인세비용 차감전순이익변화율과 조세회피행위와는 양(+)의 관계가 있으며, 부채비율 변화율과 조세회피행위와는 음(-)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의 경영에 따른 각각의 재무비율은 차별적인 특성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정성진 · 유상열(2011)은 세무조사를 수검한 기업의 BTD와 세무조사로 인한 추정세액과 세무조사가가능성간의 분석에서 세무조사를 받은 기업의 세무조사 수검 이전의 BTD가 클수록 추정세액이 증가하였음을 보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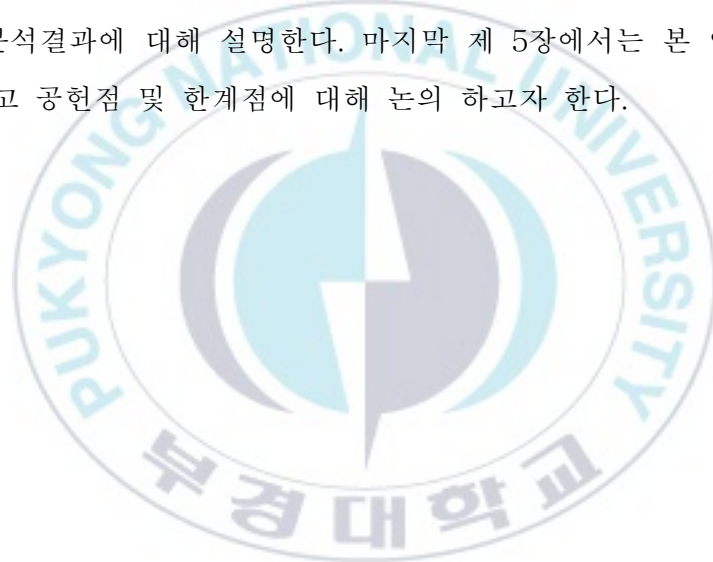
둘째, 세무조사를 수검한 기업과 대응표본으로 선정된 비 세무조사대상 기업집단을 비교 분석한 결과, 세무조사 수검 이전의 BTD가 클수록 세무조사 대상기업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조세회피추정치(BTD)의 값은 세무조사기업의 선정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기업의 중요한 재무지표특성과 기업지배구조특성을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을 통해 t-test의 방법론으로 검증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이분형 변수(binary variable)를 고려하여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을 시행하였다. 이러한 방법론을 이용하여 본 연구는 재무적 특성과 기업지배구조 특성, 재량적 발생액 그리고 조세회피 추정치를 세무조사 기업의 특성과 세무조사효과의 분석에 이용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총 5장으로 구성되며,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1장에서는 연구 배경과 목적 및 연구방법 및 논문의 구성에 대해 서술하려고 한다. 제 2장에서는 본 논문과 관련된 세무조사 기업과 비 세무조사 기업 간의 차별적인 특성과 세무조사 기업의 세무조사 전·후의 효과와 관련된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들을 검토한다. 제 3장에서는 제 2장에서 설명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본 연구에서 채택된 변수들과의 관계에 따른 가설의 설정과 연구모형을 설정한다.

제 4장에서는 모형의 실증분석 결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그에 따른 분석결과에 대해 설명한다. 마지막 제 5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공헌점 및 한계점에 대해 논의 하고자 한다.



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제1절 세무조사

1. 세무조사 선정기준

1) 세무조사 선정기준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 및 절차와 관련하여 일반적인 사항은 조사사무처리 규정에 규정되어 있으나 조사선정에 관한 분명한 사유를 명시한 규정은 없다. 최근의 조사방향은 경제적 여건이나 정책적인 배려에 의하여 조사선정을 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예를 들어, 최근 경기침체로 인하여 조선·해양업 및 건설업의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를 유보하고 있다. 한편 공평과세실현을 위하여 전문직 종사자, 사치성 소비향락업소나, 상습적으로 매출을 누락하는 입시학원이나 요식업소, 사채업자등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2)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 선정기준

(1) 세무조사 정기 선정 기준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한 대상을 선정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세무공무원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제 81조의 6 ②

①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성실함을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최근 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납세자에 대하여 업종, 규모, 경제력 집중 등을 고려하여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무작위추출방식의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

(2) 세무조사 정기 선정 외 조사

세무공무원은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①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 · 교부 · 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 · 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무자료 거래, 위장 · 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④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3) 세무조사 면제대상자

세무공무원은 다음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한 과소 신고가 명

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업종별 수입금액이 개인은 간편 장부 대상자, 법인은 수입금액이 1억원 이하 인자

② 장부 기록 등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자

-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방식으로 장부를 기록·관리할 것

- 과세기간 개시 이전에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가입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신용카드로 결제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 과세기간 개시 이전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른 발급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할 것

- 업종별 평균 수입금액 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입금액 등의 신고기준에 해당할 것

- 해당 과세기간의 법정 신고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최근 3년간 조세범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 해당 과세기간의 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국세의 체납사실이 없을 것

2. 세무조사의 방법

1) 일반조사

납세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않아서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요건 사실의 유무를 확인하여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확정할 목적으로, 납세의무자의 신고로 구체적인 납세의무가 확정된 경우에는 신고 내용의 적법성 여부를 검증할 목적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각 세법상 질문조사권 또는 질문검사권의 규정에 의한 조사, 검사원증을 소지하고 납세자의 사업장 등에 출장하여 임의조사 방법에 의하여 조사한다.

2) 특별조사

일반조사와 같은 목적으로 조사하지만 신고 내용이 극히 불성실하고 세금탈루 혐의로 보아 통상적 일반조사로서는 조사의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납세자로부터 장부 등을 임의제시를 받거나 세무관서에서 장부·서류 등을 조사하며, 장부조사 이외에 거래처조사나 금융 추적조사 등을 병행함으로써 일반조사보다 강도가 높은 세무조사를 말한다.

3) 조세범칙 조사

이중장부, 서류의 위조·변조·허위계약, 사기 및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조세를 포탈한 자 등 조세범처벌법상 범칙행위에 해당하는 자를 조사하여 처벌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법적 성격의 조사로서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라 범칙 혐의자 등을 심문하거나 장부, 서류 등을 영치 또는 압수, 수색하는 방법으로 조사한다. 이러한 범칙 조사에는 임의조사와 강제조사의 방법이 있으며, 영치조사는 임의조사에 해당하고 영장에 의한 조사는 강제조사에 해당한다.

4) 기타 조사

기타 조사는 추적조사와 기획조사를 말하는 것으로 추적조사는 재화·용역 또는 세금계산서·계산서의 흐름을 거래의 앞·뒤 단계별로 추적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을 말하며, 기획조사는 소득종류별·계층별·업종별·지역별·거래유형별 세부담 불균형이나 구조적인 문제점 등을 시정하기 위하여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별도의 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또한 2014년부터 국세청은 금융정보 분석원(FIU)정보를 세무조사에 활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추정세액이 2013년 대비 40배 넘는 세액을 추징한 결과를 낳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앞으로의 세무조사는 금융정보를 활용하는 추세이며, 정부는 국세청이 탈루 혐의가 의심되는 사건, 체납징수건과 관련해서 FIU에 의심거래보고(STR)와 2,000만원 이상의 고액현금거래(CTR) 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법 개정을 하게 되었다.

3. 연도별 국세추징금

[표 1] 연도별 국세 추징금 공시현황

(단위 : 개 , 억원)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합계
코스피	기업	6	1	3	2	3	3	8	5	10	4	46
	금액	5408	245	160	799	371	268	9292	1649	1402	1767	21906
코스닥	기업	6	2	5	4	8	8	15	8	7	2	73
	금액	335	64	131	186	492	237	825	1142	334	225	5113

전체	기업	12	3	8	6	11	11	23	13	17	6	120
	금액	5743	309	291	985	863	505	1011 7	2791	1736	1992	2701 9

위의 [표 1]은 우리나라의 상장사들의 세무조사 추정액의 현황을 보여준다. 2013년 이후 상장사들의 추정액은 연평균 4,159억원으로 이전보다 무려 7배 수준에 이른다. 이러한 사유는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한시적인 세무조사의 유예를 정상화한 결과로 보여 진다. 그 이후 2016년에는 추정 세액이 급격한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과학화, 정밀화에 따른 세무조사에 의해 추정세액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세무조사 추정액은 연도별로 2009년 6935건에 2조5506억원, 2010년 8054건에 4조676억원, 2011년 8358건에 5조1613억원, 2012년 9112건에 5조7948억원, 2013년 9520건에 7조6196억원 등이다.²⁾ 상장기업은 2009년 1.1%, 2010년 2.4%, 2011년 1.7%, 2012년 0.8%, 2013년 13%로 전체기업에 대비하여 상대적으로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2013년 이후부터 점차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여 상장기업의 세무조사 추정액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2절 선행연구

1. 세무조사기업의 일반적 특성

정달성·홍정화(2013)는 세무조사를 받은 기업의 세무조정변화와 관련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표본기업을 대상으로

2) 한국거래소 2014.09.23

t-검증을 실시한 결과 세무조사연도에는 영구적 차이와 일시적 차이를 이용하여 직전연도에 비해 과세소득을 감소시키는 공격적인 세무조정을 수행한 것으로 추론하였고 세무조사 직후 1년도에는 영구적 차이와 일시적 차이가 세무조사연도에 비하여 증가하는 사실을, 둘째, 표본기업을 대상으로 영구적 차이 및 일시적 차이에 대한 분석결과 세무조사연도에는 세무조사 직전연도 및 직후연도, 세무조사 직전연도, 세무조사 직후연도에 비해 익금산입·손금불산입되는 영구적 차이 및 일시적 차이를 감소 조정하는 것으로 추론하였다. 셋째, 통제기업을 대상으로 영구적 차이 및 일시적 차이에 대한 분석결과, 세무조사연도에는 세무조사 직전 및 직후연도, 세무조사 직전연도, 세무조사 직후연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을 보고하였다. 통제기업의 이러한 분석결과는 세무조사를 받은 기업은 세무조사연도에 과세소득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영구적 차이 및 일시적 차이를 조정한다는 것을 강력히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라고 주장하였다.

전병욱(2009)은 조세감면의 정도에 따라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분석결과를 보고하였다. 이는 개별기업과 과세관청간의 법인세 신고내용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에 기인한 것으로, 이러한 결과는 조세감면의 정도가 개별기업과 과세관청 간의 법인세 신고내용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 하에서 조세감면을 많이 받는 기업이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커지는 것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조세감면의 정도가 과세관청이 고려하는 세무조사 대상자의 선정기준에 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즉, 이는 과세관청이 과다한 조세감면을 부정적 신호로 보고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기준에 반영한다면 실제 세무조사를 통한 추정세액도 조세감면의 정도에 따라 유의적으로 증가해야만 과세관청의 선정기준이 합리적인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조세감면의 정도가 세무조사 추정세액

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조세감면을 많이 받는 기업들이 과세관청의 우려와 같이 부당감면을 통해 법인세 부담을 감소시키지는 않는 것을 보였다고 해석하였다.

홍정화 · 고병숙(2007)의 연구에 의하면 세무조사 적발확률은 세무대리인의 조세회피성향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어 세무조사 적발확률이 높아지면 조세회피성향이 줄어드는 분석결과를 보고하였다. 이는 세무당국이 세무조사의 강도를 높이면 조세회피행위를 줄일 수 있다. 또한 세무조사 대상항목은 세무대리인의 조세회피성향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납세자 가처분소득의 크기는 세무대리인의 조세회피성향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어 가처분소득이 많아지면 조세회피성향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김윤찬(2005)의 연구는 탈세에 대한 대처 수단이 세무조사와 벌과금이라는 것을 강조하였다. 탈세방지를 위해 고려해야할 점 하나는 세무조사확률과 벌과금 등이 잘 고안된 시스템을 어떻게 구현하느냐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세무조사와 벌칙부과는 세무당국이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세무조사인력 투입과 관련한 한계비용이 조세회피로 인한 초과부담(excess burden)의 감소분과 동일해야 함을 의미한다.

정진오 · 정지선(2009)은 세무조사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국세청장의 임기제 등을 도입함으로써 세무조사의 중립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세무조사를 통한 과세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관련 공무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특히, 그들은 조사대상자 선정시 지역마다 외형기준을 합리적으로 적용하여 특정 지역의 납세자가 조사대상자 선정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받는 경우가 없도록 제도의운영상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들은 세무조사의 기본원칙과 관련하여 법적인 근거가 없어 과세관청 재량의 세무조사권 행사의 남용과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 손상 가능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내용을 국세기본법에 규정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또한 그들은 세무조사연장사유를 모두 국세기본법에 일괄하여 규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하였다.

김진태 · 배수진(2016)은 세무조사 공시 이전 및 이후 기간에 대한 정보 비대칭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첫째, 세무조사 대상연도는 세무조사 이전연도보다 상대적으로 경영자와 이해관계자 간의 정보비대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업이 과세관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아 추정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은 해당 기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지만, 경영자는 이해관계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수준의 정보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어 경영자와 이해관계자 간의 정보비대칭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하였다.

둘째, 세무조사 이후연도는 세무조사 대상연도보다 상대적으로 경영자와 이해관계자 간의 정보비대칭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이후 이해관계자들이 기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더불어 경영자 또한 비조세비용의 감소를 목적으로 기업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시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다.

노현섭 · 이종국(2006)은 세무대리서비스의 만족도 관련 연구에서 시간적 측면, 기능적 측면, 비용적 측면, 기술적 측면과 물리적 측면이 모두 이용자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특히 세무대리서비스의 시간적 측면과 기능적 측면이 이용자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세무대리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평가와 만족도간의 회귀분석 결과는, 시간적 측면, 기능적 측면, 비용적 측면, 기술적 측면, 외부조정 여부, 물리적 측면, 계약기간의 순으로 설명력이 높은 변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세무대리서비스의 시간적 측면, 기능적 측면, 비용적 측면, 기술적 측면이 높게 평가될수록 이용자 만족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김진섭(2008)은 납세자와 세무대리인간에 조세인식에 차이가 있는지와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의 조세의식의 실태를 파악한 결과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이라는 기본적 태도는 긍정적인 면도 없지 않았다. 하지만, 실제적 행동에서는 부정적인 조세의식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납세자의 이러한 이중적 조세의식은 세금이 개별적보상이 없는 금전적 부담이라는 조세가 갖고 있는 일반적 특성에서 오는 것이기도 하지만 납세자의 조세제도와 세무행정에 대한 기본적 이해의 부족과 제도적 요인에서 오는 조세부담의 불공평감이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고 해석하였다. 또한 행정적으로도 납세성실도에 따른 차별적 관리수단이 미흡하며 세무행정의 공평성과 민주성 제고노력이 부족하고 세무공무원의 자세에도 문제가 있는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심태섭(2004)은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정시 고려하는 요인에 대한 연구에서 8개의 요인을 “고객의 요구,” “세무조정 대상금액,” “세무조사 가능성,” 그리고 “세법의 취지”의 네가지 요인으로 압축하였다. 이렇게 압축된 요인별로 각 요인에 속한 변수의 평균을 비교한 결과 세무조정을 할 경우에 “세법의 취지”를 가장 많이 고려한다고 보고하였으며, “세무조정 대상금액”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세무조사 가능성”과 “고객의 요구”는 상대적으로 덜 고려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세무대리인의 세무조정을 할 때 세무조정문제의 성격(금액, 중요도)와 그에 대한 세법의 규정(내용, 취지)을 많이 고려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요인에 비해 고객의 요구나 관련 항목에 대한 세무조사가능성을 덜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김남욱(2016)은 세무재조사의 의의와 법적성질, 허용기준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세무재조사요건과 절차의 명확성 확보, 중복세무조사규정의 법률유보원칙에의 적합화, 지방재정고권과 재조사규정의 합리화, 과세권자의 재조사 남용방지와 납세자의 세무조사순응도 제고 방안 등에 관한 법적 문제를 검토하였다.

김진태(2016)는 세무조사 공시정보의 유용성 연구에서 세무조사 이전기간의 경우 세무조사 및 추정세액에 관한 정보가 시장에 전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무조사 대상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 간의 현금의 시장가치는 차이가 없는 것을 보고하였다. 한편 세무조사공시기간을 대상으로 한 경우 정보공시 기업은 미 공시 기업보다 현금의 시장가치가 일부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즉, 과세관청에 의하여 경영자 또는 기업의 부정행위가 적발됨으로 인하여 경영자와 주주는 대리인 갈등을 겪게 되며, 이로 인하여 기업의 경영자는 대리인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 노력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영자와 주주 사이의 대리인 갈등을 낮추고자 하는 노력으로 인하여 현금의 시장가치는 상대적으로 더 높아졌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세무조사 이후기간의 경우 현금의 시장가치는 공시 기업과 미 공시 기업 간의 유의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즉,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및 추정세액에 관한 정보가 대리인 갈등 및 대리인 비용에 미치는 영향은 장기적이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심태섭(2011)은 세무조사기준의 공개여부에 관계없이 최소금액신고자선정방법이 임의선정방법보다는 성실신고유도에 더 효과적이라고 보고하였다. 이에 따라 임의선정방법보다는 최소금액신고자선정방법과 같이 납세자의 신고소득금액에 근거하여 세무조사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세무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을 공개할 경우, 납세자의 성실신고정

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세무당국에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세무조사기준 등에 대한 공개 정책은 납세자의 조세순응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세무당국은 세무조사 관련 정보의 공개가 성실납세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추가적인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김진섭(2008)은 세무대리인과 납세자간의 세무조사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특히 현행 세무조사에 대한 공평성 인식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세무조사원의 인원과 전문성, 세무조사 대상자의 선별정도, 세무조사의 엄정성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구통계학적 변수를 통해 차이분석을 수행한 결과, 성별에서는 세무대리인의 경우에서만 세무조사 대상자의 선별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연령에서는 세무대리인의 경우 세무조사의 공평성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납세자의 경우에는 세무조사원의 재량권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에서는 세무대리인의 경우 세무조사의 공평성과 세무조사의 엄정성에서, 납세자의 경우에는 세무조사 대상자의 선별정도, 세무조사의 업종별 전문성, 세무조사의 엄정성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에서는 세무대리인과 납세자 모두에서 세무조사의 인식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심충진(2008)의 연구에 의하면 추정세액이 발생하는 세무조사 대상기업은 세무조사 이전 연도에 비해서 세무조사 이후 1년, 2년, 3년 동안 정보의 비대칭성이 감소하였다. 이는 경영자가 기업의 정보를 정확하게 외부에 공시하도록 하는데 세무조사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추정세액의 크기와 정보의 비대칭성의 크기와의 관련성을 연구한 결과 유의적인 관련성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세무조사 전에는 추정세액의 크기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세무조사 전 추

징세액의 크기와 정보의 비대칭성 간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또한 세무조사 이후 추정세액이 있는 세무조사 대상기업과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통제기업간의 정보의 비대칭성의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였는데, 그 결과 추정세액이 있는 세무조사 대상기업이 상대적으로 정보의 비대칭성이 낮았다고 보고하였다.

정평조 · 권오현(2011)은 세무조사행정의 개선방안으로 첫째, 정기조사선정과 관련한 전산성실도 분석시스템 항목에 대해 성실도에 미치는 직·간접요인의 비중도를 검증한 후, 합리적으로 재설계하여야 한다고 보고하였다. 둘째, 수시선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수집 조직을 강화하고 고부가가치 탈세정보자료를 수집·활용하여야 한다고 보고하였다. 이를 위해 금융거래 관련 전문가 확충과 국세청 내 정보수집조직을 개편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셋째, 국제거래 등 역외탈세 관련 정보수집과 국제공조를 강화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즉, 이는 국제적 움직임을 실시간 체크하고 다국적 기업의 전 세계 관련기업을 동시 조사하는 시스템도 상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넷째, 조사대상 선정면제나 조사 유예제도를 국세기본법에 법제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조사대상 선정면제(조사유예)가 탈세피난처가 되지 않도록 사후 검증제를 두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다섯째, 새로운 탈세행위에 대응할 소프트웨어를 구축하고 이를 위해 유연하고 탄력적인 조직이 필요하다고 보고하였다.

2. 세무조사기업의 조세회피

최현섭(2012)은 조세를 회피한 기업은 조세를 회피하지 않은 기업보다 BTD가 큰 것으로 보고하였다. 단순비교검증(t-검증)을 수행한 결과 조세

를 회피한 기업이 조세를 회피하지 않은 기업보다 BTD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사업연도 소득액 중 일시적 차이를 이용하여 세무보고이익을 추정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BTD는 조세회피행위의 크기와 유의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Desai and Dhamapala(2006)가 제시한 방법과 BTD를 조세회피행위의 크기로 측정한 방법은 그 검증력에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BTD는 조세회피행위와 유의한 관련성을 가졌다고 볼 수 있어, BTD가 조세회피행위의 유용한 측정치가 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제시 하였다.

심호석 · 박재환 · 강창수(2009)는 구체적으로 회계이익과 세무이익의 차이(이후 'BTDIF'라 칭함)가 클수록, 세무조사가능성이 높은지 그리고 세무조사시 추정세액의 규모가 큰지 실증분석 하였다. 분석결과, BTDIF가 클수록 세무조사가능성이 증가하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리고 BTDIF가 클수록 추정세액의 규모가 증가하는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 세무조정 단계에서 BTDIF의 분포를 비교해 본 결과, 실제로, 조사대상기업의 BTDIF분포는 비조사 대상기업의 BTDIF분포와 별반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박상섭(2012)은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의 차이인 총 차이를 이용해 산정한 조세회피추정치와 일시적 차이를 이용해 산정한 조세회피추정치는 세무조사추정세액과 양(+)의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총 차이를 이용해 산정한 조세회피추정치와 일시적 차이를 이용해 산정한 조세회피추정치가 조세회피의 대응치로써 유용한 변수라고 주장하였다. 특히 박상섭(2012)은 영구적 차이에 의한 조세회피추정치 및 유효법인세율에 의한 조세회피 대응치는 세무조사추정세액과 유의한 관련성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정성진 · 유상열(2011)은 세무조사를 수검한 기업의 BTD와 세무조사로

인한 추정세액을 회귀분석 한 결과 세무조사를 받은 기업의 세무조사 수검 이전의 BTD가 클수록 추정세액이 증가하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또한, 세무조사를 수검한 기업과 대응표본으로 선정된 비 세무조사대상 기업집단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세무조사 수검 이전의 BTD가 클수록 세무조사 대상기업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세무조사로 인한 추정세액이 큰 기업들은 세무조사를 수검하기 직전까지는 공격적인 세무조정으로 과세소득을 낮추다가, 세무조사를 수검하는 시점에 과세소득을 정상화 시키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는 세무조사수검 이전의 BTD가 클수록 다른 기업에 비해 세무조사 대상기업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과세관청에서 세무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 동안 BTD와 세무조사와의 관계에 대한 실증연구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하지만, 일련의 선행연구는 세무조사 수검연도의 BTD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BTD와 세무조사는 서로 관련이 없다는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고 하였다.

심충진 · 이준규 · 김진태(2013)는 세무조사 대상기간에 대한 세무조사 기업의 조세회피는 비 세무조사 기업의 조세회피보다 상대적으로 기업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는 기업 투명성이 낮은 기업의 조세회피는 기업 투명성이 높은 기업의 조세회피보다 상대적으로 기업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그들은 기업 투명성이 낮은 기업의 경우 경영자에 의한 이익조정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영자의 조세회피 행위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인식을 한다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또한, 세무조사 이후 세무조사 기업과 비 세무조사 기업의 조세회피가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무조사 이후 이해관계자들이 보다 기업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고, 경영자 또한 대리인 비용을 감소시키고자 투명성을 높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세무조사 기업의 추정세액이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추정세액은 기업 가치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무조사의 종결로 인하여 기업의 투명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자본시장의 이해관계자들이 추정세액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고하였다.

박상섭(2012)은 연도별로 세무조사 전 후년의 조세회피추정치와 세무조사추징세액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세무조사 전 4년의 조세회피추정치와 세무조사추징세액은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세무조사 전 2~3년은 조세회피추정치와 세무조사추징세액 간에 양(+)의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조사 전 1년의 분석에서는 조세회피추정치와 세무조사추징세액은 음(-)의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세무조사 후 1~2년은 조세회피추정치와 세무조사추징세액이 관련성을 나타내지 않았는데, 이는 세무조사 직전년도에는 세무조사의 적발금액에 대한 위험(적발금액의 위험)이 큰 기업일수록 조세회피의 정도를 줄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세무조사라는 시점을 기준으로 가까이 왔을 때는 적발위험(적발시간의 위험)을 인식하여 조세회피를 줄인다고 볼 수 있다고 하였다.

3. 세무조사기업의 경영특성

홍순복(2007)의 연구에 의하면, 회계정보는 재무제표 중 손익계산서를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준비조사단계에서 검토하는 자료 중에서는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를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 회계정보는 질서문란행위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재량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법적·제도적인 직무수행에 대한 전문가의식과 직무환경요인이 재량권의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직무수행 시 전문가의식이 높을수록, 직무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과세재량권의 활용에 역(-)의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정준희 · 장지인 · 양대천(2013)의 연구에 의하면 대리인문제로 나타난 명시적인 사건인 세무조사 수검과 감리지적에 집중하여 세무조사 수검 대상기업 및 감리지적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 간에 원가행태의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실증분석하였다. 즉, 그들은 대리인문제가 원가의 하방경직성을 유발시키는지 직접적으로 검증하였다. 그들의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세무조사 수검 대상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세무조사 수검 이전에 매출이 감소할 때 원가(판매관리비, 판매비, 관리비, 인건비, 재량적 원가)의 감소는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세무조사 수검 전 세무조사 수검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원가의 하방경직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감리지적 대상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감리지적 이전에 매출이 감소할 때 원가(판매관리비, 판매비, 관리비, 인건비, 재량적 원가)의 감소가 상대적 적게 나타났다. 이는 세무조사 수검 대상 기업과 유사한 결과 값을 보였다.

추가적으로, 대리인 문제가 완화된 세무조사 수검과 감리지적 당해 연도 및 이후 연도에 세무조사 수검 대상기업 및 감리지적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의 원가행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대리인문제가 원가의 하방경직성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나철호 · 고종권 · 김임현(2016)은 조세를 탈루할 개연성이 높은 항목과

조세회피와의 관계에 관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조세회피 측정치 현금유효법인세율(CASHETR)의 경우에는 신고 소득률이 낮은 경우, 가족회사, 기초 재고액이 전기 기말재고액과 차이가 있는 경우, 기초·기말 재고를 계상하지 않는 경우가 조세회피와 유의한 양(+)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효법인세율(GAAPETR)의 경우에는 재평가한 토지를 처분하고 건설중인 자산의 비중이 높을수록, 신고소득률이 낮은 경우, 특수관계자대여금이 많은 경우, 기초·기말 재고를 계상하지 않는 경우 조세회피와 유의한 양(+)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조사 전과 세무조사연도의 조세회피와의 관계에 관한 분석 결과, 세무조사 직전에 비해 세무조사 연도에 조세회피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세무조사 후에는 다시 현금유효법인세율(CASHETR)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세무조사연도에 세금신고를 충실히 하다가 기간 경과에 따라 이 효과가 사라지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또한, 이들은 조세를 탈루할 개연성이 높은 항목들이 실제 세금 추정기업들을 잘 설명하는지에 대한 추정기업 예측모형을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조세를 탈루할 개연성이 높은 변수 중 추정기업들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변수는 신고 소득률, 유보금액, 재고금액 차이, 전기오류 수정 손익 발생으로 나타났다. 추정기업예측모형의 정확도는 예측표본의 경우 분위 수 기준(0.6, 0.4)에서 예측력이 68.05%, 검증표본에서는 73.27%로 나타났다.

정운오 · 전병욱(2010)의 연구에 의하면 세무조사의 착수는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 세무조사의 종결은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세무조사 관련 사건에 대한 주가반응이 일률적이지 않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부정적 시장반응은 사전통지일로부터 +2

일에 유의적으로 나타났고, 긍정적 반응은 세무조사 종결일로부터 +3일에 유의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무조사가 비록 공식적으로는 비공개 정보이지만 실제로는 관련정보가 시장에 누출되어 비교적 신속하게 주가에 반영됨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한편, 이들은 세무조사의 주가관련성이 결합가설(joint hypothesis)이라는 문제점을 회피하기 위해 공시자료로부터 추출한 표본을 이용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추정세액을 공시한 기업의 주가가 공시일 직후 거래일(+1 거래일)에 유의적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호석 · 김창수(2008)은 종속변수를 세무조사 대상기업 선정 여부로 하고 독립변수는 접대비지출과 기부금지출 그리고 기타 통제변수를 도입한 로짓모형을 설계하고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접대비지출이 클수록 세무조사가능성은 증가하였고, 접대비증가율이 높을수록 추정세액비율은 높아지는 증거를 보고하였다. 그러나 기부금은 세무조사대상선정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기업들에게 기업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접대비가 높을수록 세무조사 대상기업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따라서 과도한 접대비지출은 세무조사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기업들에게 경고하는 시사점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된다.

권순창 · 강영욱 · 김창훈 · 김정환(2009)은 기업규모가설에 따라 기업규모가 클수록 정치적비용의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들은 기업의 규모가 클 경우 회계이익을 낮추려는 유인이 존재하며, 외부감사에 대한 시선을 의식하여 조세비용을 낮추기 위한 조세회피는 감소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분석결과, 부채비율은 일시적 차이 중 비 재량적 차이를 이용하여 측정된 조세회피일 경우에만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표본기간이 1999-2005년으로 차입금 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 불산입 규정이 폐지(2006.1.1.)되기 전이므로 이 규정으로 인해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들의 조세회피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수익성 변수는 수익성이 높은 기업일수록 조세회피유인이 클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수익성(ROA)이 조세회피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 하였다.

김진희·정재욱(2006)은 법인세를 납부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재무적 특성과 조세회피 행위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Desai와 Dharmapala(2006)의 방법에 따라 조세회피를 측정하여 분석한 결과, 기업의 자산이 증가할수록 그리고 세전이익이 증가할수록 기업의 조세회피 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기업의 부채가 증가할수록 조세회피 성향이 낮은 것을 보고하였다.

4. 세무조사기업의 이익조정

이윤상(2012)은 세무조사와 이익조정간의 연구에서 세무조사 직전연도와 세무조사 직후연도의 더미변수는 재량적 발생액과 재량적 발생액의 절대값 모두 음(-)의 관련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조사 직전연도와 세무조사 연도 더미의 경우 재량적 발생액만이 음(-)의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조사 연도와 세무조사 직후연도 더미의 경우 재량적 발생액의 절대값 만이 음(-)의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윤상(2012)은 세무조사 전후 기간 더미변수와 법인세추징세액의 상호작용변수가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세무조사 직전연도와 세무조사 직후연도 더미변수를 포함한 상호작용변수의 경우 재량적 발생액만이 음(-)의 관련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조사 연

도와 세무조사 직후연도 더미변수를 포함한 상호작용변수의 경우 재량적 발생액과 재량적 발생액의 절대값 모두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조사 직전연도와 세무조사 직후연도 더미변수를 포함한 상호작용변수의 경우 재량적 발생액의 절대값만이 유의한 음(-)의 관련성을 나타냈다.

심호석 · 강창수(2006)은 재량발생과 조세최소화의 연구에서 기업이 음의 재량발생을 이용하여 보고이익을 하향조정함으로써 조세회피를 시도하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오히려 세무조사기업의 재량발생은 조세회피액이라 할 수 있는 추정세액과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고하였다. 더불어 추정세액은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와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였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세무조사기업의 조세회피정도는 양의 재량발생과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으며, 이는 세무조사 기업들이 양의 재량발생을 일으켜 보고이익은 상향조정하면서, 신고소득은 낮게 보고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고 하였다.

김문현(2007)은 세무조사 전후의 이익양상에 대한 연구에서 세무조사 이전 이익조정이 양(+)의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기업의 이익조정은 '0'과 다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조사 이전 세무조사기업의 이익조정은 조사된 3기간 동안 상승하였으나, 세무조사 이후 기간에는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기업처럼 이익조정이 '0'과 다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특성을 고려한 유동발생액 설명 모형에서는 세무조사기업과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기업 사이에 유의적인 기업특성변수에 차이가 있었다. 세무조사 이전에는 이익조정이 증가하며, 세무조사 이후에는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기업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진윤(2006)은 세무조사 추정세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에

서 직전연도의 재량적 발생액은 세무조사 추정세액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관계를 보여 이익을 축소 조정할 경우 세무조사에 의한 추정세액의 크기가 증가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기업규모는 세무조사 추정세액과 유의한 음(-)의 관계를 나타내어 기업규모가 클수록 세무조사에 대한 준비가 효과적으로 수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대주주지분율은 세무조사 추정세액과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으나, 부채비율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업력과 상장시장 더미 변수는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세무조사기업의 지배구조

곽재우 · 안형태(2016)은 감사인 으로부터 제공받는 세무서비스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감사인의 세무서비스 제공이 기업의 조세부담과 음(-)의 관련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감사인의 세무서비스 제공이 기업의 조세부담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보였다. 또한 감사인이 제공하는 세무서비스의 유형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감사인이 제공하는 세무조정 서비스만이 조세부담을 감소시키고, 감사인이 제공하는 세무서비스는 상장시장별 유형에 따라 기업의 조세부담에 있어서 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침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이영한 · 허원 · 윤성만 · 최원석(2010)의 연구에 의하면 감사인은 감사와 세무서비스분야 사이에 지식이전 효과를 이용하여 효과적으로 경영자의 조세부담을 줄인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들은 감사인의 세무서비스를 계속하여 제공받는 경우에 조세부담을 줄인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들은 감사인의 세무서비스를 계속하여 제공 받는 경우에 조세부담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감사인인 세무대리인이 피 감사인인 경영자의 조세부담을 절감하는 성과를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세무대리인의 교체 즉 감사인과 세무서비스계약을 해지한 회계연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영식 · 김용수 · 전규안(2017)은 세무조사전후의 조세회피수준의 변화에 관한 연구에서 세무조사연도의 조세회피 수준이 세무조사 전후 3개년의 조세회피 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유가증권상장기업의 경우 세무조사연도의 조세회피가 세무조사 이전보다 유의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세무조사연도와 세무조사 이후 연도 간에는 조세회피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코스닥 상장기업의 경우 세무조사연도의 조세회피가 세무조사 직전 연도의 조세회피보다 증가한다는 점에서는 유가증권상장기업과 같으나, 세무조사 이후 연도에는 세무조사연도보다 조세회피의 수준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주주1인 지분율이 높은 경우 세무조사연도와 세무조사연도 전후의 조세회피 수준은 대부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주주1인 지분율이 낮은 경우 세무조사 이전 연도보다 세무조사연도의 조세회피 수준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준은 세무조사 이후 계속 유지되었다.

외국인 지분율이 높은 경우 세무조사연도와 세무조사연도 전후의 조세회피 수준은 대부분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외국인 지분율이 낮은 경우 세무조사 이전 연도보다 세무조사연도의 조세회피 수준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준은 세무조사 2년 이후에 감소되었다고 보고하였다.

고윤성 · 김지홍 · 최원욱(2007) 역시 Desai와 Dharmapala(2006)에 근거한 조세회피 측정치를 이용한 분석결과, 조세회피 추정액은 조세 부담수준,

수익성, 소유자 지배기업 여부와 양 (+), 조세혜택수준과는 음(-)의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 그러나 자산투자비중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확인할 수 없었다. 한편, 기업의 조세회피 추정액은 기업가치와 양(+)의 유의한 관련성이 있음을 보였는데, 이들은 이러한 결과를 조세회피를 통해 조세비용이 절감됨에 따라 현금유출이 감소하여 기업가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으로 판단하였다

본 연구는 세무조사기업과 비세무조사기업에 있어 재무적 특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며, 이러한 차이가 기업지배구조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알아보하고자 한다. 또한 세무조사기업의 이익조정 및 조세회피성향이 세무조사 귀속기간과 세무조사 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므로써, 세무조사 기업의 특성과 효과를 전반적으로 알아보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차별성이 존재한다.

첫째, 본 연구는 세무조사기업의 재무적 특성을 전반적으로 알아보하고자 한다. 특히, 유동성비율, 수익성비율, 레버리지비율, 활동성비율 등의 재무비율을 중심으로 세무조사기업과 비세무조사기업의 재무적 특성을 다루고자 한다.

둘째, 본 연구는 전반적인 기업지배구조 특성을 이용하여 세무조사기업과 비세무조사기업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하고자 한다. 또한 기업의 재무적 특성이 기업지배구조는 외부지배구조(외국인투자자지분율, Bib4제휴여부, 사외이사비율, 세무전문인여부)와 내부지배구조(대주주지분율, 1대 주주지분율, 감사위원회설치여부)로 나누어 세무조사 전·후의 차이를 분석한다.

셋째, 본 연구는 세무조사기업에 있어 이익조정 및 조세회피성향이 세무조사 전과 후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넷째, 본 연구는 실증분석에 있어 다양한 통계방법론(t-검증, 로짓회귀분석 등)을 이용하여 연구결과의 강건성을 높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의 이러한 차별성을 통해 선행연구에서 다루지 않은 재무적 특성, 기업지배구조특성, 이익조정 및 조세회피성향을 다루어 체계적인 실증방법론으로 일반화된 연구결과를 도출하고자 한다.



제 3 장 연구설계

제1절 연구가설

1. 세무조사기업의 특성

권순창 · 강영옥 · 김창훈 · 김정환(2009)의 연구에서, 부채비율은 일시적 차이 중 비 재량적 차이를 이용하여 측정한 조세회피일 경우에만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들의 조세회피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다.

또한, 이들은 수익성(ROA)이 조세회피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 하였다. 접대비의 경우 지출이 클수록 세무조사가능성은 증가하였고, 접대비증가율이 높을수록 추정세액비율은 높아지는 증거가 발견되었으나 기부금의 경우에는 세무조사대상선정과 유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심호석 · 김창수, 2008).

기업의 경영 특성뿐만 아니라 기업지배구조의 특성과 관련한 이영한 · 허원 · 윤성만 · 최원석(2010)의 연구에 의하면 감사인은 감사와 세무서비스분야 사이에 지식이전 효과를 이용하여 효과적으로 경영자의 조세부담을 줄이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들은 감사인의 세무서비스를 계속하여 제공 받는 경우에 조세부담이 감소하고 있다고 하였다.

신영식 · 김용수 · 전규안(2017)의 연구에서는 대주주1인 지분율이 낮은 경우 세무조사 이전 연도보다 세무조사연도의 조세회피 수준이 증가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리고 이 수준은 세무조사 이후 계속 유지되었다.

외국인 지분율이 높은 경우 세무조사연도와 세무조사연도 전후의 조세회

피 수준은 대부분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외국인 지분율이 낮은 경우 세무조사 이전 연도보다 세무조사연도의 조세회피 수준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 수준은 세무조사 2년 이후에 감소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는 세무조사기업의 선정에 있어서 기업의 경영특성과 기업지배구조는 타 기업과는 차별적인 결과를 보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세무조사 기업의 재무구조 특성과 기업지배구조는 비 세무조사 기업의 특성과는 차별적으로 예상되어 다음과 같이 [가설 1], [가설 2]를 도출한다

[가설1] 세무조사기업과 비 세무조사 기업의 재무적 특성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1-1] 세무조사기업과 비 세무조사 기업의 유동성 비율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1-2] 세무조사기업과 비 세무조사 기업의 수익성 비율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1-3] 세무조사기업과 비 세무조사 기업의 레버리지 비율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1-4] 세무조사기업과 비 세무조사 기업의 활동성 비율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2] 세무조사기업과 비 세무조사 기업의 기업지배구조 특성은 차이

가 있을 것이다.

[가설2-1] 세무조사기업과 비 세무조사 기업의 재무적 특성은 기업지배 구조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2-1-1] 세무조사기업과 비 세무조사 기업의 재무적 특성은 내부지배 구조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2-1-2] 세무조사기업과 비 세무조사 기업의 재무적 특성은 외부지배 구조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2. 세무조사기업의 이익조정 및 조세회피성향

심충진 외(2006)은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 간의 차이가 세무조사 간에 양(+)의 관계를 확인함으로써, 이익조정을 많이 할수록 세무조사의 대상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고하고 있다. 임진윤(2006)은 세무조사 직 전연도의 재량적 발생액은 세무조사 추정세액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관계를 보여 이익을 축소 조정할 경우 세무조사에 의한 추정세액의 크기가 증가하는 보고하고 있다. 특히, 기업규모는 세무조사 추정세액과 유의한 음(-)의 관계를 나타내어 기업규모가 클수록 세무조사에 대한 준비가 효과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김문현(2007)은 세무조사 이전과 이후의 이익조정의 양상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세무조사 이전과 세무조사 기간에 세무조사를 받은 기업의 이익조정은 유의적인 양(+)의 값을 가지지만,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기업은 이익조정의 값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세무조사를 받은 기업의 이익조정은 세무조사 이전의 3기간 동안에는 상승하였으나 세무조사

이후 기간에는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기업과 동일하게 이익조정이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윤상(2012)은 세무조사로 인한 벌금 등의 부과기업으로 공시된 기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와 이익조정의 관련성을 실증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세무조사 직전에 비하여 세무조사를 받은 연도 또는 세무조사 이후의 연도에 이익조정이 음(-)의 관련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계적 이익은 증가시키고, 과세소득은 감소시키는 조정을 수행한 기업이 세무조사 이후에는 세무조사에 의한 경각심과 학습효과로 인하여 이익조정을 자제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의 결과에서와 같이 세무조사와 이익조정 간에 유의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으며, 세무조사 전후로 이익조정의 양상이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세무조사 기업은 세무조사 귀속기간과 그 이후의 이익조정에 차이가 있을 것을 예상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 3]을 설정하였다.

[가설3] 세무조사 기업은 세무조사 후 재량적 발생액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세무조사기업의 조세회피성향 선행연구는 회계이익-세무이익 차이(이하 'BTD'리 칭함)와 세무조사 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와 세무조사 전과 후의 조세회피 차이를 분석하였다. 전자는 BTD가 클수록 세무조사 가능성이 증가하는지에 관한 것으로 심충진 외(2006)는 재무보고 이익과 세무보고이익간의 차이보다는 재량적 유동발생액이 세무조사 여부 및 추정세액과 관련성이 높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심호석 · 강창수(2008)는 접대비지출이 클수록 세무조사가 가능성이 증가하였고, 접대비증가율이 높을수록 추정세액비율은 높아짐을 제시하였다.

반면, 심호석 외(2009)는 BTD가 클수록 세무조사가능성과 추정세액의 규모가 증가하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정성진 · 유상열(2011)은 세무조사기업의 경우 세무조사 수검 이전의 BTD가 클수록 추정세액이 증가하고 세무조사 대상기업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세무조사 전과 후의 조세회피 차이를 분석한 연구는 세무조사 전에 비해 후에 더 많은 조세회피를 수행하는지에 대한 분석으로 고성삼 · 박상섭(2011)은 세무조사 직전연도에 비하여 직후연도에 더 많은 조세회피를 함을 보고하였다. 박상섭(2012)은 세무조사 직전연도에는 세무조사의 적발금액에 대한 위험이 큰 기업일수록 조세회피의 정도를 줄인다고 하였다. 정달성 · 홍정화(2013)는 세무조사연도에 직전연도에 비해 과세소득을 감소시키는 공격적인 세무조정을 수행함을 보고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들의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세무조사 전에 비해 세무조사 후에는 성실한 납세의무의 수행으로 조세회피가 감소하는 지에 대해서는 사전적인 예측이 어렵다.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기업들이 세무조사를 통해 조사대상연도에 세액을 추가 징수 당하지만 세무조사연도뿐만 아니라 이후 연도에 오히려 더 많은 조세회피를 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세무조사를 받은 기업은 당해 연도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일반적으로 차후 몇 년간 세무조사의 대상에서 회피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조세회피 성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기세무조사는 5년마다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일부 기업에서는 그 기간을 경과하여 수검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세무조사 수검 전에는 공격적인 조세회피 경향이 크며, 수검시점부터 보수적인 세무조정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다(정성진 · 유상열, 2011). 기업의 입장에서 세무조사는 세무조사를 받는 순간만 잘 모면하면 된다는 인식이 팽배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세무조사 이후 연도에는 성실한 납세의무가 지속적으로 이행되지 않

는 것이다.

세무조사가 조세의 추가 징수에 그칠 뿐 조사 이후 기간의 납세순응에는 커다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과세당국의 입장에서는 세무조사연도 및 이후연도에 성실 납세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적인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세무조사연도에 세무조사에 따른 납세당국의 압박은 기업으로 하여금 납세순응을 통해 조세회피를 감소시키는 유인이 될 수 있다. 세무조사연도 또는 조사연도 이후에 조세회피를 한다 또는 그렇지 않다는 선행연구의 결과가 있으나 제한적인 표본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고 조세회피 측정치도 LTD를 이용한 결과만이 제시되어 실증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조세회피측정에 있어 정교한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세무조사 기업은 세무조사 귀속기간과 그 이후의 조세회피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 4]를 설정하였다.

[가설4] 세무조사 기업은 세무조사 후 조세회피성향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제2절 연구모형과 변수의 측정

1. 연구모형

1) [가설 1-가설 2]의 검증모형

본 절에서는 제1절에서 논의한 가설에 대한 검증을 위해 모형들을 제시

한다. 세무조사기업과 비 세무조사기업의 재무적 특성(유동성 비율, 수익적 비율, 레버리지 비율, 활동성 비율)에 따른 차이를 검증하려는 [가설1]을 위한 모형은 <식 1> 과 같다.

$$DETECT_{1,2} = \beta + \beta_1 FINAN + \beta_2 CONT + \varepsilon \quad \text{<식 1>}$$

다음은 세무조사기업의 기업지배구조 특성(내부지배구조와 외부지배구조)에 따른 차이를 검증하려는 [가설 2]를 위한 모형은 <식 2>와 같다.

$$DETECT_{1,2} = \beta + \beta_1 CG + \beta_2 CONT + \varepsilon \quad \text{<식 2>}$$

다음은 [가설 1]에서 다른 세무조사기업과 비 세무조사기업의 재무적 특성(유동성 비율, 수익적 비율, 레버리지 비율, 활동성 비율)이 기업지배구조 특성(내부지배구조와 외부지배구조)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가설 2] 관련을 검증하기 위한 모형으로 <식 2-1> 과 같다.

$$DETECT_{1,2} = \beta + \beta_1 FINAN + \beta_2 CG + \beta_3 FINAN * CG + \beta_4 CONT + \varepsilon \quad \text{<식 2-1>}$$

여기에서, 종속변수인 $DETECT_{1,2}$ 는 0과 1로 나타나는 이항변수로 다음과 같이 두 집단을 대상으로 한다.

비교집단 1 : 세무조사기업 = 1 비세무조사기업 = 0

또한 모형의 이항변수(DETECT)에 적용될 독립변수로서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FINAN:재무적 특성

LIQU : 유동성 비율(Liquidity ratio)

CR : 유동비율 $[\text{유동자산}/\text{유동부채} \times 100]$

QR : 당좌비율 $[\text{당좌자산}/\text{유동부채} \times 100]$

LEVE : 레버리지 비율(Leverage ratio)

NCR : 비 유동비율 $[\text{비 유동자산}/\text{총자산} \times 100]$

SDEBT : 단기차입금 비율 $[\text{단기 차입금}/\text{전체 차입금} \times 100]$

LEV : 부채비율 $[\text{부채}/\text{자기자본} \times 100]$

CDR : 유동부채비율 $[\text{유동부채}/\text{자기자본} \times 100]$

PROF : 수익성 비율(Profitability ratio)

ROA : 총자산 순이익률 $[\text{보고기간 말 당기순이익}/\text{총자산} \times 100]$

ROE : 자기자본 순이익률 $[\text{보고기간 말 당기순이익}/\text{자기자본} \times 100]$

GPS : 매출액 총이익률 $[\text{매출총이익}/\text{매출액} \times 100]$

ACT : 활동성 비율(Activity ratio)

TAT : 총자산 회전을 $[\text{총자산회전을} = \text{매출액}/\text{총자산}]$

INVT : 재고자산 회전을 $[\text{총자산회전을} = \text{매출액}/\text{재고자산}]$

ART : 매출채권 회전을 $[\text{총자산회전을} = \text{매출액}/\text{매출채권}]$

CG :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

EXTCG : 외부지배구조(External Corporate Governance)

FOR : 외국인투자자 주식보유비율

BIG4 : Big4 제휴 법인
OUT : 사외이사비율
TAX : 세무전문인 여부

INTCG : 내부지배구조(Internal Corporate Governance)

HOLD : 대주주 주식보유비율
ONEHOLD : 1대주주 지분율
AUDIT : 감사위원회 설치여부

CONT : 통제변수

SIZE: 기업규모
CFO: 영업현금흐름
ROE: 자기자본순이익률
YD: 연도더미
IND: 산업더미

2) [가설 3~가설 4]의 검증모형

세무조사기업의 세무조사 귀속기간과 세무조사 이후의 재량적 발생액과 조세회피성향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3] ~ [가설4]을 검증하기 위한 모형은 <식 2> 및 <식 2-1>과 같다.

$$DETECT_{3,4} = \beta + \beta_1 DA + \beta_3 CONT + \varepsilon \quad \text{<식 2>}$$

$$DETECT_{3,4} = \beta + \beta_1 TAXAV + \beta_3 CONT + \varepsilon \quad \text{<식 2-1>}$$

여기에서, 종속변수인 $DETECT_{3,4}$ 는 0과 1로 나타나는 이항변수로 다음과 같다.

비교집단 1 : 세무조사 귀속기간 = 1 세무조사이후 0

DA : 이익조정- 재량적 발생액

TAXAV: 조세회피성향

(Desai and Dharmapala(2006)에 근거하여 측정한 조세회피추정액)

2. 변수의 측정

가. 재무적 특성-재무비율

1) 유동성 비율(Liquidity ratio)

(1) 유동비율

유동비율은 단기적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단기간 내에 현금화 될 수 있는 자산의 규모를 보여주어 채무자의 단기지급능력 측정에 이용이 된다. 은행가 비율(banker's ratio) 이라고도 하며 해당비율이 클수록 건전한 상태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text{유동비율} = \text{유동자산} / \text{유동부채} \times 100$$

(2) 당좌비율

유동자산 중 현금화 속도의 정도가 빠른 당좌자산에 대비 유동부채의 비율로서 산성시험비율(Acid test ratio) 이라고도 한다. 빠른 부채상환능력을 측정하는 대표적 지표이며, 해당비율이 클수록 건전수준이 높으며, 유동비율과 보완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text{당좌비율} = \text{당좌자산} / \text{유동부채} \times 100$$

2) 레버리지 비율(Leverage ratio)

(1) 비 유동자산 비율

비 유동자산 비율은 기업의 설비자산이 주를 이루며, 투자자산도 여기에 해당한다. 기업의 자산 중 유동성 및 부채상환능력과는 상관없으나, 기업의 매출근원이 되는 자산이므로 해당 자산의 보유현황은 기업의 생산능력과 직결되는 자산이다.

$$\text{비 유동자산 비율} = \text{비 유동자산} / \text{총자산} \times 100$$

(2) 단기차입금 비율

차입금 비율은 단기 차입금을 전체 차입금으로 나눈 값으로, 단기차입금 비율이 높을수록 단기적으로 갚아야 할 빚이 많아 기업의 유동성 문제와 관련성이 높다.

$$\text{차입금 비율} = \text{단기 차입금} / \text{전체 차입금} \times 100$$

(3) 부채비율

총부채를 총자산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박종일·김경호(2002)는 회계이익과 과세소득과의 차이는 부채비율과 유의한 음(-)의 관련성을 가진다고 보았다. 박종국·홍영은(2009)의 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부채가 많은 기업들은 이자비용을 통한 감세효과로 인해 비 부채 감세수단으로써의 조세회피에 다소 소극적일 수 있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고 하였다.

$$\text{부채비율} = \text{부채/자기자본} \times 100$$

(4) 유동부채비율

자본의 안전성 및 단기성 부채에 대한 위험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기업의 안정성 검토에 대표적인 지표이며, 상환기간이 단기이며 금리가 높은 유동부채를 가지고 있다면 유동성에 따른 위험이 크다고 할 수 있다.

$$\text{유동부채비율} = \text{유동부채/자기자본} \times 100$$

3) 수익성 비율(Profitability ratio)

(1) 총자산(총자본)순이익률

총자본인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을 더한 값을 경영성과에 대비한 비율로서 경영효율성 지표의 대표적인 지표이며 투자수익률(return on investment : ROI)을 보여주는 지표를 말한다.

$$\text{총자산(총자본)순 이익률} = \text{당기순이익/총자산} = \text{당기순이익/매출액} \times \text{매출액/총자산}$$

$$= \text{매출 순 이익률} \times \text{총자산회전율}$$

(2) 자기자본 순 이익률

기업의 경영성과를 투하된 자기자본(순 자본)에 대한 비율로 자기자본의 투자효율성을 측정하는 지표이며 출자자의 입장에서 이용효율성 분석, 배당정책, 주가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비율로 높을수록 양호하지만 과도하게 높은 것은 자기자본의 부족에 의한 기업재무구조의 안정성과 유동성을 저해 할 수 있다.

$$\text{자기자본 순 이익률} = \text{당기순이익/자기자본} \times 100$$

(3) 매출액 총이익률

매출총이익 대비 매출액에 대한 비율로서 기업의 기본적인 활동능력을 반영하는 지표이며, 매출액의 크기가 높다고는 하나 매출원가가 더 크게 상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익의 증가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기업의 구매능력과 생산효율, 기본적으로 기업의 당기순이익의 증감상태를 추정할 수 있는 등의 기본적인 활동의 능력을 측정하는 지표이다.

$$\text{매출액 총이익률} = \text{매출총이익/매출액} \times 100$$

4) 활동성 비율(Activity ratio)

(1) 총자산 회전율

기업의 총자산이 해당기간에 몇 번 회전하였는가, 즉 총자산이 몇 배의 매출액을 실현했는지를 나타냄으로써 총자산에 대한 효율성을 측정하는 지

표로서, 경영활동에 투하된 총자산의 효율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지표이다.

$$\text{총자산회전율} = \text{매출액} / \text{총자산}$$

(2) 재고자산회전율

재고자산이 몇 번이나 현금화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재고자산의 회전속도를 나타내는 지표를 말한다. 재고자산의 회전율이 낮다면 이는 그만큼 재고보유기간이 길어져 보관유지비, 이자비용증가, 보험료, 재고자산 감모손실, 하자보수비 등의 경비부담이 커져 기업의 유동성과 수익성이 감소하게 된다.

$$\text{재고자산회전율} = \text{매출액} / \text{재고자산}$$

(3) 매출채권 회전율

영업활동의 순환과정에서 매출채권의 현금화속도를 보여주며, 소요운전자금의 계획이나 신용정책의 결정, 예산편성 등에 사용된다. 이 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유동성이 높음을 의미하고, 국가의 산업별 경기와 해당기업의 신용정책과 종목군에 따라 차이가 있다.

$$\text{매출채권회전율} = \text{매출액} / \text{매출채권}$$

나. 기업지배구조 특성

1) 기업외부 지배구조(External Corporate Governance)

(1) 외국인 지분율

김창수 · 천미림(2009)의 연구에 의하면 외국인 지분율은 부정회계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신한현 · 장진호의 연구에서도 금융위기 이후 외국인 투자자의 감시 역할을 향상시켰다고 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외국인 지분율의 특성에 따른 세무조사기업선정에 유의성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기업 지배구조 특성에 대한 독립변수로 선정하였다.

(2) Big4 제휴 감사법인

나종길 · 최관(2002)에 의하면 BIG4 감사법인들은 타 감사법인에 비해 더욱 선진화된 감사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감사업무의 체계와 공인회계사의 훈련에 보다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있고 감사 후의 재무제표를 통한 재량적 발생액도 타 감사법인에 비하여 적다고 하였다. 이는 BIG4 감사법인은 조세회피 가능성을 낮출 것으로 예상된다.

(3) 사외이사비율

대표이사 선임과 업무집행에 관한 회사 의사결정기구로써 업무집행을 감시·감독하는 권한의 경영 핵심기관으로 독립적인 사외이사제도가 보장된다면 회사의 감시·감독의 강화로 인하여 조세회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한국상장회사 협의회, 2011).

(4) 세무전문인 여부

Choi et al.(2009)은 기업들이 감사인으로부터 세무서비스를 구입함으로써 조세를 회피하고 있다는 증거를 얻지 못하였다 하지만, 이들은 감사인

이 세무서비스와 기타 비감사서비스를 함께 제공한 일부 표본기업의 경우에는 감사인의 세무서비스 제공이 조세회피 수단으로 사용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세무전문인 여부에 따른 조세회피는 차별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2) 기업내부지배구조(Internal Corporate Governance)

(1) 대주주 지분율

창성목 · 연순희 · 이병철(2000)은 과점주주비율이 높은 기업은 과점주주비율이 낮은 기업에 비하여 감리지적을 많이 받는다는 가설로 Logit 분석에서 유의한 결과를 얻었다고 하였다. 이는 과점주주나 대주주 등의 지분율에 따른 회계부정으로 세무조사기업 선정 가능성 커질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2) 1대 주주 지분율

Shleifer and Vishney(1997)은 기업의 통제력이 외부소액주주를 지배주주의 이기적이고 기회주의 행위로부터 보호하는 데 비효율적이라고 보았다. 이는 지배주주의 과도한 경영지배로 인하여 회계부정의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조세회피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3) 감사위원회 설치여부

기업의 감사기구인 기업 관점에서는 회계부정과 이로 인한 파산을 예방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사회적 경제주체 간의 신뢰 및 경기 부양을 제고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감사기구의 설치로 인한 회계장부의 건전성으로 조세회피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다. 이익조정- 재량적 발생액

본 연구에서 가설 3의 검증을 위한 이익 조정의 대응 변수는 재량적 발생액으로 사용하였다. 이익 조정의 대응 변수인 재량적 발생액의 추정하는 데에 있어서 수정 Jones 모형(Dechow et al. 1995)을 사용하였다. 재량적 발생액은 총 발생액(total accruals) 중, 경영자가 재량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을 의미한다.

재량적 발생액(DA)은 총 발생액에서 비 재량적 발생액을 차감하여 추정한다. 총 발생액은 당기순이익(NI)에서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CFO)을 차감하여 계산하고, 비 재량적 발생액은 수정 Jones모형으로 추정한다. 재량적 발생액 추정 시 연도별 횡단면 분석을 함께 고려하였으며 수정 Jones모형의 추정식은 다음과 같다.

$$\frac{TA_t}{A_{t-1}} = \alpha_0 \frac{1}{A_{t-1}} + \alpha_1 \left[\frac{\Delta REV_t - \Delta REC_t}{A_{t-1}} \right] + \alpha_2 \left[\frac{PPE_t}{A_{t-1}} \right] + \epsilon$$

----- <식 3>

$$DA = \frac{TA_t}{A_{t-1}} - \left[\alpha_0 \frac{1}{A_{t-1}} + \alpha_1 \left(\frac{\Delta REV_t - \Delta REC_t}{A_{t-1}} \right) + \alpha_2 \left(\frac{PPE_t}{A_{t-1}} \right) \right]$$

----- <식 4>

여기서, TA_t : t년도 총 발생액

ΔREV_t : t 년도 매출액의 변화분

ΔREC_t : t 년도 매출채권의 변화분

PPE_t : t 년도 유형자산(유형자산-토지-건설 중인 자산)

A_{t-1} : t-1년도 총자산

ε_t : t년도 오차항

라. 조세회피성향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로 이용되는 Desai and Dharmapala(2006)의 연구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세회피변수를 측정한다.³⁾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인 BTD가 조세회피 때문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익조정행위에 의해서도 발생하기 때문에 BTD에서 이익조정행위로 인해 발생된다고 간주되는 부분을 제거해야 조세회피로 인한 부분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

조세회피추정액을 측정하기 위하여 BTD와 총발생액을 <식 5>를 이용하여 무절편회귀로 구한 잔차(v_{it})로 추정된 부분($TAXAV_{it}$)이 BTD 중 총발생액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으로써 조세회피추정액이다. <식 5>의 잔차를 회귀식을 통해 추출함에 있어서 기업고유의 효과를 통제하기 위하여 고정효과모형의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⁴⁾ 다음의 <식 5-1>이 조세회피 측정치

3) 조세회피에 대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정의가 아직 없어 조세회피를 측정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이용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조세회피를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는 측정치는 없고, 각각의 측정치는 상대적인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연구주제에 따라 다른 측정치들이 이용되고 있다. 유효법인세율(ETR)은 세전이익 단위당 평균세금부담을 의미하므로 ETR이 작을수록 조세회피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분자의 차이에 따른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금유효법인세율은 법인세납부액을 세전이익으로 나누어 계산하므로 세법상 가속상각이나 이익을 지연시키는 세무전략의 영향을 받으며, 분자와 분모가 시차의 영향으로 올바른 대응이 안 될 수 있다. 장기현금유효세율은 시차에 의해 발생하는 편의를 줄일 수 있고, cash ETR의 연도별 변동성을 완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장기측정치를 포함한 ETR은 세무이익에 영향을 주는 모든 거래를 반영하고 있기에 절세, 효과적인 세무계획과 ATP를 구분하지 못한다. BTD는 conforming tax avoidance는 잡아낼 수 없고 세무이익이 다양한 기업들의 조세회피활동을 비교할 경우에는 사용하기 어렵다.

본 연구는 BTD에서 비재량적 부분을 제외한 재량적 방법을 조세회피추정치로 이용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이 방법도 추가적 오류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신중한 해석이 필요하나, 조세회피와 관계없는 부분을 제거하고 조세회피로 인한 부분을 구분해낸다는 것은 개념적으로 타당하고 유효한 방법이다(고종권 외 2013).

4) 회귀모형의 잔차(ν_{it})는 v_{it} 와 ε_{it} 로 구성된다. v_{it} 는 관측되지 않는 개별 효과(firm-specific effect)로서 기업 경영진의 관측되지 않는 기업가적 자질이나 운영상의 숙련 등 회귀분석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개별 기업의 특징들이 주는 효과를 설명한다. 이는 결국 개별 기업의 기술적 효율성 수준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각 기업에 고유한 것이므로 시간이 지나도 변화하지 않는(time invariant)다고 본다. 반면 ε_{it} 는 잔여의 교란항으로 i와 t에 따라 변하는 통상의 교란항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가 된다.

$$BTD_{it} = \beta_1 TACC_{it} + v_{it} \quad \text{<식 5>}$$

BTD_{it} :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

$TACC_{it}$: 기업i의 t년도 총발생액을 기초총자산으로 나눈 값

v_{it} : 잔차로서 기업고유효과를 통제한 기업별 조세회피추정액

$$TAXA V_{it} = v_{it} \quad \text{<식 5-1>}$$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의 차이(BTD)는 식(6)과 같이 측정하였고 BTD의 산출은 아래와 같다.

$$BTD_t = (BL_t - TL_t) / Asset_{t-1} \quad \text{<식 6>}$$

BL_t : t년도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

TL_t : t년도 과세소득(전규안 · 김철환, 2008)의 방법⁵⁾을 이용 측정함

$Asset_{t-1}$: t년도 기초총자산

TL_t : t년도 과세소득의 계산에서 과세소득 * 법인세율 = 법인세부담액이므로
추정과세소득 = $\frac{\text{법인세부담액}}{\text{법인세율}}$ 을 기본으로 구하였으며, 아래의 방법으로 우리나라 1999년부터 2017년까지 각 해당연도의 법인세율 및 추정과세소득을 구하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는 이러한 개별기업의 고유 효과를 통제하기 위하여 고정효과모형(firm fixed effect model)을 사용하여 추출한 잔차를 조세회피추정액으로 사용하였다(고윤성 외 2007).

5) 과세소득 * 법인세율 = 법인세부담액이므로 추정과세소득 = $\frac{\text{법인세부담액}}{\text{법인세율}}$ 과 같이 구할 수 있다

2017년	$[(2\text{억} \times 10\%) + (X - 2\text{억}) \times 20\% + (X - 200\text{억}) \times 22\%] \times [1 + 10\%(\text{주민세})] = \text{법인세부담액}$	$X = \frac{[(\text{법인세부담액}/1.1) - (2\text{억} \times 10\%) - (198\text{억} \times 20\%)]}{22\%} + 200\text{억}$
-------	---	--

마. 통제변수

1) 기업규모(SIZE)

총자산에 자연 로그 값을 취하여 $\ln(\text{총자산})$ 이며, 김진희·정재욱(2006)은 기업의 자산규모가 커질수록 조세감소를 위한 조세회피행위의 정도가 높다고 하였다. 박종국·홍영은(2009)은 기업규모의 경우 규모의 경제에 따라 우월한 조세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측면과 정치적 비용가설에 입각하여 조세회피에 소극적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기업규모를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2) 영업현금흐름(CFO)

영업현금흐름을 기말총자산으로 나누어 계산하며, 영업현금흐름이 높을수록 자금의 여유가 있다. 자금의 여유가 있는 기업은 조세회피를 고려할 여유가 많으므로 더 많은 조세회피를 할 것이다. 박종국·홍영은(2009)은 조세비용은 직접적인 현금유출을 수반하므로 기업의 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영업현금흐름을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3) 자기자본 순이익율(ROE)

박종국·홍영은(2009)의 연구에서 조세혜택의 대용치 및 수익성 대용치(ROE)를 통제변수로 하고 있고 이는 기업의 이익증감변동이 조세회피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어 본 연구에서 자기자본 순이익율을 통제변수로

추가하였다.

4) 연도더미(YD)

세무조사에 대한 연도별 기업의 경제적 부가가치가 다르고 세무조사의 강도가 다를 것으로 예상되어 연도별 세무조사에 따른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통제하고자 한다.

5) 산업더미(IND)

산업특성에 따라 조세회피의 정도 및 방법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산업에 따른 조세회피의 차이를 통제하고자 한다.

제3절 표본선정

본 연구의 검증대상은 세무조사 기업이다. 검증 표본의 기간은 2001년부터 2015년 까지 15개년 동안의 세무조사를 받은 85개의 기업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2001년부터 2015년 까지 세무조사를 받은 기업의 세무조사 귀속기간과 세무조사 후의 기간을 비교 분석을 위해서 표본의 기간은 2001년부터 2016년까지이다.

- ① 2001년 ~ 2015년의 귀속으로 국세청으로 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기업
- ② 금융업, 금융 관련 서비스업, 보험업 등이 아닌 기업
- ③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및 KIS-VALUE에서 재무자료 등이 입수 가능한 기업
- ④ 12월 결산 기업
- ⑤ 세무조사 후 폐업, 합병, 증자 등이 없는 기업

본 연구에서 금융업을 제외한 기업만을 표본으로 선정한 이유는 회계처리방법이나 계정과목 등이 일반 타 기업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즉, 분석의 일관성이 없고 분석결과에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이기 위하여 동일한 조건을 지닌 산업의 표본들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12월 결산 기업만으로 표본을 선정한 것은 표본기업의 동질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우리나라기업은 12월 결산법인이 아닌 기업은 병원이나 학교 또는 특정산업에 속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세무조사 이후 폐업, 합병, 증자 등이 있는 기업은 기업의 자본구조가 바뀌었거나, 연구결과에 오류를 가져다 줄 수 있으므로 표본에서 제거하였다. 추가로 자료가 미비한 기업의 경우에도 제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세무조사 246개의 기업과 산업별 평균을 산출하기 위하여 각 산업별로 표본을 수집·구성하였고 개별 기업의 연도별 재무제표 자료와 각 재무비율 자료는 한국 신용평가정보(주)에서 제공하는 KIS-VALUE를 통해서 수집하였다. 분석과 관련된 변수들을 확인이 불가능한 기업 123개를 제외한 최종 표본 123개를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폐업 및 합병에 의한 기업과 KIS-VALUE 등에서 자료를 구할 수 없는 기업 2개와 정기적인 세무조사에 의한 기업 36개를 제외한 85개의 기업이 표본 분석대상이다.

다음의 [표 3]는 표본기업의 선정과정이며, [표 4]는 산업별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산업구성은 한국 신용평가정보(주) 산업분류기준의 중분류에 따라 구분하였다. [표 4]에서 알 수 있듯이 해당 표본은 다양한 산업에 걸쳐 분포되어 있으며, 본 연구의 결과가 특정 산업에 의해서만 도출된 것이 아님을 잘 보여준다.

[표 3] 표본기업의 선정과정

표 본 선 정 과 정	기업 - 연도수
1999년부터 2015년까지 계속 기업으로써 12월 결산기업의 총 표본의 수	246
세무조사 미 확인 기업 및 금융 보험업이거나 폐업 및 합병에 의한 기업	(123)
자료가 미비한 기업	(2)
정기 세무조사 기업	(36)
실제 검증에 이용한 최종표본의 수	85

[표 4] 표본의 산업별 분포

기업명	업체 수	비 율
화학제품 제조업	6	7%
의료용 물질/의약품 제조업	8	9.4%
건설업	11	14%
금속제조업	7	8.2%
전자부품,통신장비 제조업	9	10.5%
자동차/운송장비	8	9.4%
도매 및 상품중개업	3	3.5%
전문서비스업	8	9.4%
사업 및 기타서비스업	4	4.7%
기 타	23	23.9%
합 계	85	100%

상기 [표 4]에 의하면 세무조사 기업은 전자부품·통신장비 제조업이 10.5%, 건설업 14%, 도·소매업 3.5%, 자동차/운송장비업이 9.4%, 전문서비

스업이 9.4%으로 산업별로 차별적인 분포를 보이고 있다. 특히 건설업이
세무조사를 받는 빈도가 가장 큼을 알 수 있다.



제 4 장 실증분석

제1절 기술통계량과 상관관계

1. 기술통계량

[표 5]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들의 기술 통계량을 나타내는 표이다. 먼저, 유동성 비율(Liquidity ratio)의 대표 변수인 유동비율은 평균이 163.934이고 레버리지 비율(Leverage ratio)의 대표변수인 부채비율은 128.329으로 나타났다. 세무조사 기업의 특성상 부채비율은 최댓값과 최솟값의 편차가 다소 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수익성 비율(Profitability ratio)의 대표 변수인 총자산 순 이익률은 4.542로 나타났고, 활동성 비율(Activity ratio)의 대표변수인 재고자산 회전율은 56.469로 나타났다.

지배구조 특성의 대표변수인 외국인 지분율(16.674), BIG4(0.718), 사외이사비율(0.165), 세무전문인 여부(0.077)의 평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관심변수인 사외이사비율과 세무전문인 여부는 표본기업들 중 각각 16.5%와 7.7%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량적 발생액(DA)의 평균과 중위수는 각각 0.121과 0.125로 나타났고, 표준편차는 0.169로 나타났다. 조세회피 측정치(BTD)의 평균과 중위수는 각각 - 0.643과 - 0.03으로 나타났으며, 표준편차는 9.244로 나타났다.

[표 5] 기술통계량

	평균	표준편차	최대값	75 분위수	중위수	25 분위수	최소값
CR	163.934	124.227	262.740	189.820	132.020	95.440	2.300

QR	129.056	99.135	219.550	156.790	108.380	69.250	2.300
NCR	122.772	86.121	319.650	156.580	107.840	77.030	20.380
SDEBT	.582	.360	1.000	.906	.666	.258	.000
LEV	128.329	132.388	237.320	163.140	93.490	52.448	1.450
CDR	87.684	94.143	332.070	105.628	62.075	34.783	.130
ROA	4.542	16.586	40.160	8.250	4.790	1.300	-6.790
ROE	9.309	19.152	82.800	16.675	9.140	2.980	-2.930
GPS	26.463	25.324	100.000	32.935	17.760	11.718	-8.000
TAT	1.006	.513	3.300	1.330	.920	.650	.040
INVT	56.469	250.509	282.920	23.720	11.210	7.080	.380
ART	15.860	94.928	222.230	18.950	5.290	3.585	.550
FOR	16.674	16.064	59.840	19.660	15.550	4.510	.000
BIG4	.718	.450	1.000	1.000	1.000	.000	.000
OUT	.165	.244	3.000	.286	.000	.000	.000
TAX	.077	.267	1.000	.000	.000	.000	.000
HOLD	32.474	18.796	99.800	44.420	31.260	16.760	.000
ONEHOLD	31.420	17.454	100.000	42.500	30.930	15.800	.000
AUDIT	.167	.374	1.000	.000	.000	.000	.000
SIZE	26.474	1.748	31.596	27.923	26.029	25.276	18.400
CFO	.058	.093	.427	.108	.053	.007	-.670
BTD	-0.643	9.244	10.42	-0.002	-0.03	-0.089	-20.06
DA	0.121	0.169	0.63	0.203	0.125	0.049	-2.53

여기서, CR :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100]

QR : 당좌비율 [당좌자산/유동부채 × 100]

NCR : 비 유동비율 [비 유동자산/총자산 × 100]

SDEBT : 단기차입금 비율 [단기 차입금/전체 차입금 × 100]

LEV : 부채비율 [부채/자기자본 × 100]

CDR : 유동부채비율 [유동부채/자기자본 × 100]

ROA : 총자산 순이익률 [보고기간 말 당기순이익/총자산 × 100]

ROE : 자기자본 순이익률 [보고기간 말 당기순이익/자기자본 × 100]

GPS : 매출액 총이익률 [매출총이익/매출액 × 100]

TAT : 총자산 회전율 [총자산회전율 = 매출액/총자산]

INVT : 재고자산 회전율 [총자산회전율 = 매출액/재고자산]

ART : 매출채권 회전율 [총자산회전율 = 매출액/매출채권]

FOR : 외국인투자자 주식보유비율

BIG4 : Big4 제휴 법인

OUT : 사외이사비율

TAX : 세무전문인 여부
HOLD : 대주주 주식보유비율
ONEHOLD : 1대주주 지분율
AUDIT : 감사위원회 설치여부
SIZE: 기업규모
CFO: 영업현금흐름
BTD: 회계이익과 세무이익의 차이
DA: 재량적 발생액

2. 상관관계 분석

[표 6]은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들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표이다. 유동성 비율(Liquidity ratio)의 대표 변수인 유동비율은 단기차입금 비율, BIG4, 총자산액(SIZE)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고, 레버리지 비율(Leverage ratio)의 대표변수인 부채비율은 당좌비율, 매출액 총 이익률, 총자산액(SIZE)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수익성 비율(Profitability ratio)의 대표 변수인 총자산 순 이익률은 BIG4, 유동비율, 당좌비율, 비 유동비율 등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활동성 비율(Activity ratio)의 대표변수인 총자산 회전율은 비 유동비율, 자기자본 순 이익률, 감사위원회 설치여부, 총자산액, 매출액 총이익률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지배구조 특성변수인 사외이사비율은 세무전문인 변수와 사외이사 비율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고 사외이사 비율은 외국인 지분율과 대주주 지분율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가설 3], [가설 4]와 관련된 재량적 발생액(DA)과 조세회피 측정치(BTD)은 각각 단기차입금 비율, 총자산 이익률, 외국인 지분율, BIG4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표 6] 상관관계분석

	CR	QR	NCR	SDEBT	LEV	CDR	ROA	ROE	GPS	TAT	INVT	ART	FOR	BIG4	OUT	TAX	HOLD	ONEHOLD	AUDIT	SIZE	CFO	BTD
CR	1																					
QR	.927**	1																				
NCR	-.377**	-.407**	1																			
SDEBT	-.224**	-.160**	-.113*	1																		
LEV	-.030	-.091*	.255**	-.076	1																	
CDR	-.067	-.083	.203**	.008	.913**	1																
ROA	.108*	.083*	-.303**	-.065	-.092*	-.087	1															
ROE	.049	.029	-.545**	-.081	-.089*	-.105	.811**	1														
GPS	-.014	.020	-.046	-.005	-.138**	-.171**	.066	.066	1													
TAT	.039	.025	-.120**	.068	.007	.083*	.088*	.160**	-.267**	1												
INVT	-.036	.006	-.031	.089	.009	.030	.022	.011	.061	.082	1											
ART	-.072	-.067	.011	.032	-.038	-.061	.003	-.013	.153**	-.110*	.019	1										
FOR	-.315	-.410	-.046*	-.380*	.081	.148	-.249**	-.106	.011	-.072	-.007	-.239*	1									
BIG4	-.190**	-.150	.082**	-.184**	.030	.015	.145**	.172**	.030	-.076	.016	.009	.357*	1								
OUT	-.015	-.012	.027	.016	.011	-.001	.009	-.072	-.004	-.076	-.048	-.041	.272	-.009	1							
TAX	-.011	-.015	-.048	-.001	.041	.049	.035	.030	-.054	.005	-.040	.005	-.004	.009	.324**	1						
HOLD	.001	-.003	.082	.006	-.012	-.004	.036	.050	.001	.085	-.030	.156**	-.474**	-.078	-.100	-.072	1					
ONEHOLD	.007	-.010	-.017	-.035	-.001	.000	.047	.071	.070	.074	.030	.056	-.545**	.005	.007	.054	.723**	1				
AUDIT	.012	.034	-.027	-.012	.087	.036	.008	-.004	.006	-.108*	-.021	-.031	.496**	-.010	.539**	.343**	.039	.033*	1			
SIZE	-.342**	-.343	.352**	-.289**	.176**	.120**	.046	.021	.002	-.142**	-.096	.014	.594**	.380**	.051	-.022	.024	-.127	.004	1		

CFO	.009	-.001	-.047	-.145**	-.001	-.010	.504**	.344**	.001	.085*	.059	-.035	.582**	.204**	-.007	.016	.084	.055	.010	.141**	1	
BTD	-.0002	0.017	0.029	-0.056**	-0.001	-0.016	0.001**	0.006**	-0.007	0.019	0.01	0.007	0.16**	-0.029*	-0.022	0.013	0.039	0.026	0.02	0.023	0.053	1
DA	-.0008	-0.072	0.158**	-0.131**	0.027	-0.029	0.741**	0.297**	0.057	0.032	-0.042	0.009	-0.618**	0.176**	0.008	0.039	0.057	0.055	0.01	0.13**	0.048	0.000



제2절 세무조사기업의 재무적 특성

[표 7]은 세무조사 기업의 재무적 특성의 t검증 결과이다. 먼저 세무조사 기업과 비 세무조사 기업의 유동성 비율(LIGQ)은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1-1]을 검증결과 유동성비율(LIGQ)은 유동비율($t=-3.043$, $p=0.003$)으로 1% 이내의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유동성 비율인 당좌비율($t=-3.037$, $p=0.003$)으로 역시 1% 이내의 유의한 수준의 결과를 보였다. 둘째, 세무조사기업과 비 세무조사 기업의 수익성 비율은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1-2]의 검증결과 총자산 순이익률(ROA)($t=1.475$, $p=0.141$) 자기자본 순이익률(ROE)($t=1.721$, $p=0.084$) 매출액 총이익률(GPS)($t=3.268$, $p=0.001$)의 결과가 나와 자기자본 순이익률(ROE)는 10% 이내의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매출액 총이익률(GPS)은 1% 이내의 유의한 수준의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또 다른 변수인 총자산 순이익률(ROA)는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보였다.

셋째, 세무조사기업과 비 세무조사 기업의 레버리지 비율(LIGQ)은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1-3]의 검증 결과 비 유동비율(CR)($t=-1.584$, $p=-0.113$)과 유동부채비율(CDR)($t=-1.434$, $p=-0.152$)은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단기차입금 비율(SDEBT)($t=-2.58$, $p=-0.01$)은 1% 이내의 유의한 수준의 결과를 보였으며, 부채비율(LEV)($t=-1.847$, $p=-0.065$)은 10% 이내의 유의한 수준의 결과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세무조사기업과 비 세무조사 기업의 활동성 비율은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1-4]을 검증결과 총자산 회전율(TAT)($t=1.259$, $p=-0.209$), 재고자산 회전율(INVT)($t=1.416$, $p=-0.158$), 매출채권 회전율(ART)($t=1.416$, $p=-0.158$)의 결과가 나와 활동성 비율은 유의한 결과의 값을 보이는 변수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들 변수는 세

무조사기업의 특성에 유의한 변수가 아님을 보여주었다. 이상의 결과를 정리해 보면, 세무조사기업의 특성에 관한 유의한 변수는 유동비율, 당좌비율, 단기차입금 비율, 부채비율, 자기자본 순이익률, 매출액 총이익율의 6개의 변수가 특성변수임을 보여주었다.

[표 7] 세무조사기업의 재무적 특성의 t검증 결과

구분	변수	세무조사 기업	비 세무조사기업	평균차이	t-검증 ¹⁾
		평 균	평 균		
LIQU	CR	160.21	307.33	-147.41	-3.043*** (0.003)
	QR	125.57	272.37	-146.79	-3.037*** (0.003)
ACT	TAT	1.456	1.020	0.435	1.259 (0.209)
	INVT	492.30	318.33	173.97	1.416 (0.158)
	ART	376.96	9.246	367.72	1.416 (0.158)
LEVE	NCR	125.83	139.69	-13.86	-1.584 (0.113)
	SDEBT	0.499	0.563	-0.63	-2.58*** (0.01)
	LEV	129.28	151.62	-22.33	-1.847* (0.065)
	CDR	89.55	102.89	-13.34	-1.434 (0.152)
PROF	ROA	4.71	3.88	0.82	1.475 (0.141)
	ROE	8.24	5.47	2.76	1.721* (0.084)
	GPS	28.53	23.85	4.68	3.268*** (0.001)

주1) 변수의 정의는 <표 4>의 하단과 같음

주2) *, **, *** 는 각각 유의수준 0.1, 0.05, 0.01에서 유의적임.

[표 8]은 세무조사 기업의 재무적 특성의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검증 결과이다. Hosmer 와 Lemeshow 검증에서는 카이제곱 값은 6.378 ($p=0.605$)로 모형의 적합도는 유의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종속 변수의 실제치와 예측치 간의 차이가 작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모형의 적합도가 수용할만한 수준임을 보여준다⁶⁾.

우도비의 카이제곱 값은 적합성도 높고 통계적 유의성(1291.763, $p=0.060$)도 확보하고 있다. 첫째 세무조사기업과 비 세무조사 기업의 유동성 비율(LIGQ)은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1-1]을 검증결과 유동성비율(LIGQ)은 유동비율(WALD=0.452, $p=0.501$)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또 다른 유동성 비율인 당좌비율(WALD=0.365, $p=0.056$)의 결과를 보여 10% 이내의 유의한 수준의 결과를 보였다. 둘째, 세무조사기업과 비 세무조사 기업의 수익성 비율은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1-2]의 검증결과 총자산 순이익률(ROA)(WALD=0.745, $p=0.388$) 자기자본 순이익률(ROE)(WALD=0.887, $p=0.356$)의 결과를 보여 유의한 수준의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매출액 총이익률(GPS)(WALD=4.971, $p=0.026$)의 결과를 보여 5% 이내의 수준에서 유의한 결과의 값을 보였다.

셋째, 세무조사기업과 비 세무조사 기업의 레버리지 비율(LIGQ)은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1-3]의 검증 결과 비 유동비율(NCR)(WALD=0.476, $p=0.490$)은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고 유동부채비율(CDR)(WALD=18.891, $p=0.000$)은 1% 이내의 유의한 수준의 결과를 보였으며 단기차입금 비율(SDEBT)(WALD=5.909, $p=0.015$)은 5% 이내의 유의한 수준의 결과를 보였다. 부채비율(LEV)(WALD=2.744, $p=0.098$)은 10% 이내의 유의한 수준의 결과를 보였다.

6) 이학식 · 임지훈, 2013, spss 18.0 매뉴얼 pp:352

넷째, 세무조사기업과 비 세무조사 기업의 활동성 비율은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1-4]을 검증결과 총자산 회전율(TAT)(WALD=4.921, p=0.027)의 결과를 보여 5% 이내의 유의한 수준의 결과를 보였다. 재고자산 회전율(INVT)(WALD=4.934, p=0.026)의 결과를 보여 총자산 회전율과 같이 5% 이내의 유의한 수준의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매출채권 회전율(ART)(WALD=0.025, p=0.125)의 결과가 나와 유의한 수준의 결과를 보여주지 못했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세무조사기업의 특성에 관한 유의한 변수는 당좌비율, 매출액 총이익률, 단기차입금 비율, 부채비율, 유동부채비율, 총자산 회전율 그리고 재고자산 회전율의 7개의 변수가 특성변수임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는 t검증과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을 하여 검증력을 높였다. 두 가지 방법에 의한 유의수준의 결과에 부합하는 세무조사기업의 특성변수는 당좌비율, 매출액 총이익률, 단기차입금 비율, 부채비율임을 보여주었다.

[표 8] 세무조사기업의 재무적 특성의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결과

구분	측정변수	예측부호	계수 결과	Wald Chisq	유의확률
LIQU	CR	+	-0.001	0.452	0.501
	QR	+	0.004	3.650	0.056
ACT	TAT	+	0.309	4.921	0.027
	INVT	+	0.000	4.934	0.026
	ART	+	0.001	0.025	0.125
LEVE	NCR	+	0.001	0.476	0.490
	SDEBT	+, -	0.829	18.891	0.000
	LEV	-	0.003	2.744	0.098
	CDR	-	-0.005	5.909	0.015
PROF	ROA	+	0.015	0.745	0.388
	ROE	+	-0.007	0.887	0.356
	GPS	+	-0.008	4.971	0.026

통제변수	SIZE	+	0.127	7.661	0.006
	CFO	-	-0.008	1.133	0.287
Hosmer 와 Lememsho 검증			카이제곱 6.378(p=0.605)		
2 Log Likelihood			카이제곱 1291.763(P=0.060)		

주) 변수의 정의는 <표 4>의 하단과 같음

제3절 세무조사기업의 기업지배구조 특성

[표 9]은 세무조사 기업과 비 세무조사기업의 기업지배구조 특성의 t검증 결과이다. 먼저 세무조사기업과 비 세무조사 기업의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은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2]의 검증결과 BIG4(10% 이내 유의), 사외이사비율(1% 이내 유의), 세무전문인 여부(1% 이내 유의) 수준의 결과를 보였다. 결과에 의하면 세무조사기업은 비 세무조사기업에 비해 BIG4 와 사외이사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4대 감사법인과 사외이사비율이 조세회피에 대한 부정을 회피하기 보다는 오히려 경영자와의 유착으로 인하여 감사와 감시기능이 떨어지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세무전문인을 보유한 기업은 비 세무조사기업에 비해 낮아 조세회피 억제에 적절한 감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 외의 기업지배구조 특성인 대주주 지분율, 외국인 지분율, 감사위원회 설치여부는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아 차별적인 특성을 보였다.

[표 9] 세무조사기업의 기업지배구조의 t검증 결과

변 수	세무조사기업	비 세무조사기업	평균차이	t-검증
	평 균	평 균		
BIG 4	0.7519	0.7094	0.0425	0.058*
대주주 지분율	36.5625	35.4498	1.1127	0.398

외국인 지분율	13.74	12.36	1.384	0.662
감사위원회 설치여부	0.3522	0.3710	-0.1881	0.464
사외이사비율	0.3641	0.3373	0.0267	0.000***
세무전문인 여부	0.1134	0.1674	-0.0540	0.004***

주) *, **, *** 는 각각 유의수준 0.1, 0.05, 0.01에서 유의적임.

[표 10]은 세무조사 기업과 비세무조사기업의 기업지배구조 특성의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검증 결과이다. Hosmer 와 Lemeshow 검증에서는 카이제곱 값은 19.225 ($p=0.014$)로 모형의 적합도는 유의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종속변수의 실제치와 예측치 간의 차이가 크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모형의 적합도가 다소 부족함을 보여준다.

우도비의 카이제곱 값은 통계적 유의성(23.852, $p=0.001$)을 확보하고 있어 모형은 유용성과 적합성을 확보하고 있다. 첫째 세무조사기업과 비 세무조사 기업의 기업 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은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2]의 검증결과 BIG4(WALD=2.813, $p=0.093$), 대주주 지분율(WALD=5.906, $p=0.015$), 사외이사비율(WALD=9.518, $p=0.002$), 세무전문인 여부(WALD=7.443, $p=0.006$)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 지분율(WALD=0.950, $p=0.330$), 감사위원회 설치유무(WALD=0.515, $p=0.473$)는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아 세무조사기업과 비 세무조사기업의 기업지배구조 특성은 차별적인 결과를 보였다. 세무조사기업과 비 세무조사기업의 기업지배구조 특성의 t검증 결과와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검증 결과 두 검정에서 유의한 결과의 값을 보인 변수는 BIG4, 사외이사비율, 세무전문인 여부 변수가 유의함을 보여 연구결과에 대한 강건성을 높였다.

[표 10] 세무조사기업의 기업지배구조의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결과

변 수 상수항		예측 부호	계수 -.096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결과	
				Wald Chisq	유의 확률
외부 지배 구조	BIG4		-1.480	2.813	.093
	외국인지분율	-	.027	.950	.330
	사외이사비율	+	2.145	9.518	.002
	세무전문인 여부	+	-.616	7.443	.006
내부 지배 구조	대주주지분율	-	.066	5.906	.015
	감사위원회 설치유무	+	-.141	.515	.473
	부채비율	-	.001	4.774	.029
	SIZE	+	.020	.036	.850
	CFO	+	-.046	.294	.588
	ROA	+, -	.004	.181	.671
		+, -			
Hosmer 와 Lememsho 검증			카이제곱 19.225(p=0.014)		
2 Log Likelihood			카이제곱 23.852(p=0.001)		

[표 10-1]은 세무조사 기업의 재무적 특성에 기업지배구조변수를 상호작용변수로 추가한 경우의 로짓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한 결과이다. 본 분석에서는 [표 8]의 결과, 즉 기업지배구조 특성의 분석 결과 중 유의한 결과를 산출한 기업지배구조변수를 상호작용변수로 사용하였다. 외부지배구조변수로 사외이사비율을 사용한 경우의 결과이다.

[표 10-1] 외부 기업지배구조에 따른 재무적 특성의 차이 로짓분석결과

모 형	$DETECT_{1,2} = \beta + \beta_1 FINAN + \beta_2 CG + \beta_3 FINAN * CG + \beta_4 CONT + \varepsilon$ <식 2-1>				
	변수	계 수	Wald Chisq	p-value	LR of Model (p value)
LIQU	CR	0.0010	0.41	0.471	73.075 (0.001)
	CR*OUT	0.0015	1.27	0.046	
	QR	0.0040	3.65	0.056	

	QR*OUT	0.0060	10.22	0.005		
	SIZE	0.006	5.27	0.001		
	CFO	0.0001	0.74	0.117		
ACT	TAT	0.2790	3.72	0.027		
	TAT*OUT	0.4666	13.77	0.002		
	INVT	0.0116	3.91	0.0175		
	INVT*OUT	0.0184	13.80	0.002		
	ART	0.0010	0.03	0.125		
	ART*OUT	0.0000	0.01	0.063		
	SIZE	-0.0016	45.27	0.000		
	CFO	-0.0001	0.84	0.111		
					129.143	(0.001)
LEV	NCR	0.0010	0.48	0.490		
	NCR*OUT	0.0000	0.74	0.227		
	SDEBT	0.0290	18.89	0.000		
	SDEBT*OUT	0.0256	0.296	0.216		
	LEV	-0.0126	2.74	0.081		
	LEV*OUT	0.0206	0.154	0.003		
	CDR	0.0037	4.23	0.003		
	CDR*OUT	0.0131	0.96	0.122		
	SIZE	-0.0021	2.92	0.009		
PROF	CFO	0.0027	0.57	0.191		
	ROA	0.0161	1.05	0.128		
	ROA*OUT	0.0000	0.35	0.190		
	ROE	0.0096	1.91	0.261		
	ROE*OUT	0.0058	16.76	0.000		
	GPS	0.0080	4.97	0.026		
	GPS*OUT	0.0027	0.664	0.273		
	SIZE	0.0171	2.66	0.004		
	CFO	0.0012	4.76	0.000		
					89.463	(0.001)

주1) 변수의 정의는 <표 4>의 하단과 같음

주2) DETECT: 세무조사기업 1, 비세무조사기업 0을 부여

[표 10-2]는 세무조사 기업의 재무적 특성에 기업지배구조변수로 내부기업재배구조변수를 상호작용변수로 추가한 경우의 로짓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결과이다. 본 분석에서도 [표 10-1]에서와 같이 기업지배구조 특성의 분석 결과 중 유의한 결과를 산출한 내부기업지배구조변수인 대주주지분율을 사용한 경우의 결과이다.

[표 10-2] 내부 기업지배구조에 따른 재무적 특성의 차이 로짓분석결과

모 형	$DETECT_{1,2} = \beta + \beta_1 FINAN + \beta_2 CG + \beta_3 FINAN * CG + \beta_4 CONT + \varepsilon$ <식 2-1>				
	변수	계 수	Wald Chisq	p-value	LR of Model (p value)
LIQU	CR	-0.0001	2.42	0.007	81.844
	CR*OUT	0.0061	7.50	0.001	
	QR	0.0003	2.56	0.001	
	QR*OUT	0.0004	6.36	0.000	
	SIZE	0.0004	31.12	0.000	
	CFO	0.0000	4.37	0.002	
ACT	TAT	0.0184	2.97	0.000	114.640
	TAT*OUT	0.0308	8.33	0.000	
	INVT	0.0008	3.09	0.000	
	INVT*OUT	0.0012	8.50	0.000	
	ART	0.0161	5.18	0.002	
	ART*OUT	0.0047	1.71	0.010	
	SIZE	0.0078	8.56	0.000	
LEV	CFO	0.0191	1.07	0.005	123.747
	NCR	0.0003	3.75	0.027	
	NCR*OUT	0.0000	0.56	0.1001	
	SDEBT	0.0002	9.55	0.000	
	SDEBT*OUT	0.0071	0.22	0.125	
	LEV	-0.0035	10.19	0.002	
	LEV*OUT	0.0096	1.12	0.267	
	CDR	0.0026	6.54	0.000	
	CDR*OUT	0.0002	1.25	0.126	
PROF	SIZE	0.0079	0.09	0.001	77.199
	CFO	0.00420	0.01	0.012	
	ROA	0.0126	7.53	0.000	
	ROA*OUT	0.0098	0.29	0.021	
	ROE	0.0174	0.92	0.128	
	ROE*OUT	0.0092	2.40	0.006	
	GPS	-0.0002	3.88	0.000	
	GPS*OUT	0.0001	0.20	0.059	
	SIZE	-0.0172	7.29	0.000	
	CFO	0.0067	0.73	0.000	

주) 변수의 정의는 <표 4>의 하단과 같음

주2) DETECT: 세무조사기업 1, 비세무조사기업 0을 부여

제4절 세무조사기업의 세무조사전후의 이익조정 차이

[표 11]은 세무조사 해당년도와 세무조사 후(t+1) 재량적 발생액(DA)의 차이에 대한 t검증 결과이다. 결과에 의하면 5% 이내의 유의한 수준에서

세무조사년도에는 재량적 발생액이 0.0223의 결과를 보이거나 세무조사 후 (t+1)에는 0.0580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김문현(2007)의 연구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는 결과를 보였다. 세무조사년도에 비해 세무조사 후 재량적 발생액이 증가하는 이유는 세무조사 후 일정기간 세무조사와 과세권자의 관심도 세무조사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 경영자가 조세 회피적 성향이 증가하여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표 11] 재량적 발생액의 t검증 결과

측정변수 DA(재량적발생액)	세무조사년도	세무조사 후(t+1)	평균차이	t-검증
	평 균	평 균		
	0.0223	0.0580	-0.03573	0.039**

[표 12]는 세무조사 기업의 세무조사 해당년도와 세무조사 후(t+1)의 재량적 발생액(DA)의 차이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검증 결과이다. Hosmer 와 Lemeshow 검증에서는 카이제곱 값은 13.284(p=0.102)로 모형의 적합도는 유의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종속변수의 실제치와 예측치 간의 차이가 크다고 볼 수 있어 모형의 적합도가 다소 떨어짐을 보여준다.

우도비의 카이제곱 값은 통계적 유의성(4.858, p=0.183)을 확보하고 있어 모형은 유용성과 적합성을 확보하고 있다. 세무조사기업의 세무조사 해당년도와 세무조사 후(t+1)의 재량적 발생액(DA)의 차이는 WALD=2.944, p=0.086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여 세무조사 후 t검증 결과와 동일하게 재량적 발생액이 상승함을 보여주었다.

[표 12] 재량적 발생액의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결과

변 수	예측부호	계수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결과	
			Wald Chisq	유의확률
상수항		-.003	0.000	0.990
DA	+	1.329	2.944	0.086
CFO	-	-0.007	0.074	0.786
ROA	+	0.005	0.468	0.494
SIZE	+	0.280	10.911	0.001
LEV	-	-0.001	1.404	0.236
Hosmer 와 Lememsho 검증		카이제곱 13.284(p=0.102)		
2 Log Likelihood		카이제곱 4.858(p=0.183)		

제5절 세무조사기업의 세무조사전후의 조세회피차이

[표 13]는 세무조사 해당년도와 세무조사 후(t+1) 조세회피 측정치(BTD)의 차이에 대한 t검증 결과이다. 결과에 의하면 10% 이내의 유의한 수준에서 세무조사년도에는 조세회피 측정치(BTD)이 -3.296의 결과를 보이나 세무조사 후(t+1)에는 -0.044으로 증가함을 보여주어 재량적 발생액의 결과와 같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표 13] 조세회피성향의 t검증 결과

변수 TAXAV	세무조사년도	세무조사후(t+1)	평균차이	t-검증
	평 균	평 균		
	-3.296	-0.044	3.252	0.086*

[표 14]는 세무조사 기업의 세무조사 해당년도와 세무조사 후(t+1)의 조세회피 측정치(BTD)의 차이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검증 결과이다. Hosmer 와 Lemeshow 검증에서는 카이제곱 값은 13.173(p=0.102)으로 모형의 적합도는 유의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

속변수의 실제치와 예측치 간의 차이가 크다고 볼 수 있어 모형의 적합도가 다소 떨어짐을 보여준다.

우도비의 카이제곱 값은 통계적 유의성(28.245, $p=0.000$)을 확보하고 있어 모형은 유용성과 적합성을 확보하고 있다. 세무조사기업의 세무조사 해당년도와 세무조사 후(t+1)의 조세회피 측정치(BTD)의 차이는 WALD=1.264, $p=0.261$ 로 t검증 결과와는 달리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즉 조세회피 측정치(BTD)는 세무조사 기간과 세무조사 후의 차이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심충진 · 이준규 · 김진태(2013)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두 검증에서 모두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아 세무조사기간과 세무조사 후의 조세회피 측정치(BTD)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제3절의 재량적 발생액의 검증에서와 같이 해당 표본의 평균이 증가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는 세무조사 후 경영자들은 차후 세무조사에서 배제될 것으로 기대되어 이익조정과 회계부정으로 조세회피를 하려는 유인이 강하게 작용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14] 조세회피 측정치의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결과

변 수	예측부호	계수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결과	
			Wald Chisq	유의 확률
상수항		-.003	0.000	0.990
TAXAV		-0.006	1.264	0.261
CFO	+	0.644	2.192	0.139
ROA	-	0.003	3.995	0.046
SIZE	+	0.028	11.128	0.001
Hosmer 와 Lememsho 검증		카이제곱 13.173($p=0.106$)		
2 Log Likelihood		카이제곱 28.245($p=0.000$)		

제 5 장 결 론

탈세행위는 국가재정에 직접적 타격을 주고 국민후생지출에 따른 감소를 유발시켜 나라전체의 문제가 된다. 특히, 탈세 행위는 소득재분배와 자원배분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야기 시키고, 불공정한 조세부담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러한 탈세행위를 유발시키는 요인이나 동기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세무조사의 주된 목적은 납세자의 탈세여부를 조사하는 것이며 탈세사실이 드러나는 경우에는 조세의 확보와 가산세 등의 처분을 실행하는 것이다. 탈세 유형은 일반적으로 고의적으로 수익을 누락하거나 가공경비를 경비로 처리하여 소득금액을 줄이고 과세표준을 감소시켜 실제 지출하는 세금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탈세유형의 사례로는 수입금액(매출, 장려금) 누락, 실제 매입하지 물품을 매입한 것으로 처리하여 비용을 과다 계상하는 경우, 실제 지급하지 않은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 사업자의 개인적 지출비용을 사업과 관련한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 자산을 비용으로 계상하는 경우 및 손익 귀속연도를 임의로 조작하여 세금 납부를 지연하는 경우 등이 있다.

탈세상황을 추적하거나 목격하는 경우 납세자의 성실한 세금의 신고와 납부를 유도하기 위하여 납세상황을 면밀히 검토·조사하기 위하여 세무공무원이 검사·조사·확인하는 일련의 모든 행위가 바로 세무조사이다. 세무조사기업의 경우 세무조사연도에는 세무조사 적발의 위험이 없으므로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분식행위의 유인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세무조사 이후 세무조사를 당분간 받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여 조세회피의 가능성을

더욱더 높여주게 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세무조사 목적과 사례를 기초로 하여 세무조사기업의 특성을 여러 측면에서 검증하였다.

검증결과 첫째, 유동성비율(유동비율, 당좌비율), 수익성 비율(총자산 순이익률, 자기자본 순이익률, 매출액 총이익률) 및 레버리지 비율(단기차입금 비율, 부채비율)은 세무조사기업과 비 세무조사 기업의 비교검증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활동성 비율(총자산 회전율, 재고자산 회전율, 매출채권 회전율)은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검증에서는 유동성비율(당좌비율), 수익성 비율(매출액 총이익률), 레버리지 비율(유동부채비율, 단기차입금 비율, 부채비율) 및 활동성 비율(총자산 회전율, 재고자산 회전율)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를 바탕으로 세무조사기업의 특성에 관한 유의한 변수는 당좌비율, 매출액 총이익률, 단기차입금 비율, 부채비율, 유동부채비율, 총자산 회전율 그리고 재고자산 회전율의 7개의 변수가 특성변수임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는 t검증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하여 검증력을 높였다. 두 가지 방법에 의한 유의수준의 결과에 부합하는 세무조사기업의 특성변수는 당좌비율, 매출액 총이익률, 단기차입금 비율, 부채비율의 4가지가 세무조사기업의 특성임을 보여주었다.

둘째, 세무조사 기업과 비 세무조사기업의 기업지배구조 특성의 t검증결과는 BIG4, 사외이사비율, 사외이사 비율중 세무전문인 여부 수준의 결과를 보였다. 이는 세무조사기업이 비세무조사기업에 비해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검증에서도 BIG4, 대주주 지분율, 사외이사비율 및 사외이사의 세무전문인 여부는 유의한 결과를 보였으나, 외국인 지분율과 감사위원회 설치유무는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세무조사 기업과 비 세무조사기업의 기업지배구조 특성의 t검증 결과와 로지스틱 회귀분석 검증 결과 등 두 검정에서 유의한 결과의 값을 보인 변수는 BIG4, 사외이사비율, 사외이사 세무전문인 여부 변수가 유의함을 보였다. 이는 4대 감사법인과 사외이사비율이 조세회피에 대한 부정을 회피하기 보다는 오히려 경영자와의 유착으로 인하여 감사와 감시기능이 떨어지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세무전문인을 보유한 기업은 비 세무조사 기업에 비해 낮아 조세회피 억제에 적절한 감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 외의 기업지배구조 특성인 대주주 지분율, 외국인 지분율, 감사위원회 설치여부는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아 차별적인 특성을 보였다.

셋째, 세무조사 해당년도와 세무조사 후(t+1) 재량적 발생액(DA)의 차이에 대한 t검증 결과 유의한 수준에서 세무조사년도에는 재량적 발생액이 0.0223의 결과를 보이나 세무조사 후(t+1)에는 0.0580으로 증가함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세무조사년도에 비해 세무조사 후 재량적 발생액이 증가하는 이유는 세무조사 후 일정기간 세무조사와 과세권자의 관심도 세무조사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 경영자등이 조세 회피적 성향이 증가하는 이유의 결과로 보인다. 로지스틱 회귀분석검증에서도 유의한 결과를 보여 세무조사 후 t검증 결과와 동일하게 재량적 발생액이 상승함을 보여주었다.

넷째, 조세회피 측정치(BTD)의 차이에 대한 t검증 결과에 의하면 유의한 수준에서 세무조사년도에는 조세회피 측정치(BTD)이 -3.296의 결과를 보이나 세무조사 후(t+1)에는 -0.044으로 증가함을 보여주어 재량적 발생액과 같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검증에서 조세회피 측정치(BTD)의 차이는 t검증 결과와 달리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즉 조세회피 측정치(BTD)는 세무조사 기간과 세무조사 후의 차이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심충진 · 이준규 · 김진태(2013)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두 검증에서 모두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아 세무조사기간과 세무조사후의 조세회피 측정치(BTD)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재량적 발생액의 검증에서와 같이 해당 표본의 평균이 증가하는 결과를 보여 세무조사 후 경영자들은 차후 세무조사에서 배제될 것으로 기대되어 이익조정과 회계부정으로 조세회피를 하려는 유인이 강하게 작용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세무조사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그러나 정기세무조사를 받은 기업은 표본에서 제외하였다. 대응기업 선정에서 국세 부과 제척기간이 완료되지 않아 차후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기업일 가능성이 있으며 현재에 탈세행위가 미 적발된 기업일 수 있다. 이는 분식회계기업과 세무조사기업의 대응기업 선정 시 늘 고려되었던 문제점이다. 또한 세무조사 기업선정에서 세무조사 및 추징세액의 공시는 추징세액이 발생된 기업 중 추징세액의 규모가 자기자본의 5/100(대규모법인, 25/1,000)이상일 경우에만 공시의무가 있기 때문에 대응기업 중 세무조사기업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조세회피 측정치의 선정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정의는 없는 실정이며 방법 또한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을 뿐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는 측정치는 없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차후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조세환경과 기업적 특성이 고려된 정교하고 섬세한 조세회피 측정치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세무조사기업의 재무적 여러 특성과 기업지배구조특성을 분류한 후 세무조사기업과 비 세무조사기업의 차이를 분석하였고, 세무조사기간과 세무조사 후 재량적 발생액, 조세회피 측정치(BTD)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부분은 기존의 선행연구와는 달리 영역별, 형태별, 구조별로 다양한 측정변수들을 포함하

여 투자자, 채권자, 신용평가기관, 과세권자 에게 기본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정보를 뿐만 아니라 여러 추가 고려점을 제공해 줄 수 있다.

또한 기업측면에서는 조세전략과 조세행정에서 세무조사 착수와 세무조사에 대응하는 기업의 행태를 이해하고 효율적 조세행정 운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론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각 지배구조들에 의한 분석결과를 제시함으로써 외국인투자자나 대주주 등의 투자 성향을 분석할 수 있는 기본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곽재우·안형태, 2016 “감사인의 세무서비스 동시 제공 여부, 유형 및 보수
가 조세부담에 미치는 영향” 회계연구 22(3) pp1-33.

권순창·강영옥·김창훈·김정환, 2009 “조세회피와 기업특성에 관한 분석” 국
제회계연구 26 pp189-210.

고윤성·김지홍·최원욱, 2007, “조세회피와 기업 특성 및 기업 가치에 관
한 연구,” 세무학연구 24(4) 9-40.

김남욱, 2016 “세무재조사에 관한 법적 검토” 공법학연구 17(3) pp205-233.

김문현, 2007 “세무조사 전후 이익조정 의 양상” 세무와 회계저널 8(4)
pp243-260.

김윤찬, 2005 “세무조사의 이론과 현실에서의 적용가능성” 경상논총 23(1)
pp25-50.

김진섭, 2008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의 조세인식 분석” 한국콘텐츠학회 논
문지8(10) pp142-150.

김진섭, 2008 “세무조사에 대한 인식도 차이 분석”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8(3) pp205-214.

김진태·배수진, 2016 “ 과세관청의 세무조사가 경영자와 이해관계자 간의
정보비대칭을 감소시키는가?” 국제회계연구 66 pp1-20.

김진태, 2016 “세무조사 공시정보의 정보유용성에 관한 연구” 조세연구
16(4) pp37-58.

김진희·정재욱, 2006 “기업의 재무적 특성이 조세회피행위에 미치는 영향”
세무학 연구 23(4) pp97-123.

김창수·천미림, 2009 “분식회계기업의 내부지배구조 특성에 관한 연구” 대
한경영학회지 22(1) pp575-593.

김철영, 2001 “납세자의 탈세선택에 관한 연구” 국제회계연구 4 pp.53-65.

나종길·최관, 2003, “회계발생액과 차별적 감사수요” 회계학연구 28(1)
pp1-31.

나철호·고종권·김임현, 2016 “세무조사 선정기준과 조세회피와의 관계 및
추징기업예측 모형” 회계학연구 41(6) pp159-207.

노현섭·이종국, 2006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의 세무대리서비스 만족도 평가”
대한경영학회지 19(3) pp961-985.

박상섭, 2012 “대체적 조세회피대용변수의 실증적 타당성 검토” 대한경영
학회지 25(6) pp2601-2628.

박상섭, 2012 “세무조사 적발위험과 조세회피의 관련성” 회계학연구 37(3)
pp41-81.

박종국·홍영은, 2009 “조세회피와 외국인 지분율” 세무학연구 26(1)
pp105-135.

박종일·김경호, 2002 “세금비용과 이익조정이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
이에 미치는 영향” 회계학연구 27(2) pp81-117.

신영식·김용수·전규안, 2017 “세무조사 전후 연도의 조세회피 수준 변화에
관한 연구” 세무학연구 34(1) pp107-147.

신현한·장진호·조영준, 2004 “1997 년 금융위기를 전후로 한 한국기업의 경영투명성 변화:재무분석가 이익예측자료를 이용한 분석” 회계저널 13(2) pp1-26.

심태섭, 2004 “세무대리인의 세무조정시 고려요인에 대한 연구” 대한경영학회지 (42) pp231-245.

심태섭, 2011 “세무조사기준의 공개가 세무신고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세무학연구 28(2) pp133-163.

심충진·김문현·이종운, 2006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 간의 차이와 세무조사 및 추정세액에 대한 실증연구” 세무학연구 23(4) pp9-27.

심충진·이준규·김진태, 2013 “세무조사 여부에 따른 조세회피와 기업가치에 관한 연구” 회계정보연구 31(4) pp81-104.

심충진, 2008 “세무조사와 정보의 비대칭성” 회계저널 17(4) pp267-289.

심호석·강창수, 2006 “재량적 발생을 이용한 조세최소화” 산업경제연구 19(5) pp1903-1920.

심효명·박종국·홍영은, 2014 “정부별 조세정책이 기업의 조세회피성향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영교육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pp1-25.

심호석·김창수, 2008 “접대비와 기부금지출이 세무조사에 미치는 영향” 대한경영학회지 21(3) pp961-984.

심호석·박재환·강창수, 2009 “회계이익과 세무이익의 차이와 세무조사” 대한경영학회지 22(1) pp229-260.

이영한·허원·윤성만·최원석, 2010 “감사인의 세무서비스가 기업의 조세부담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영학회 통합학술발표논문집 pp1-24.

이윤상, 2012 “세무조사와 이익조정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대한경영학회지 25(6) pp2687-2704.

임진윤, 2006 “세무조사 추정세액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세무학연구 23(3) pp167-190.

전규안·김철환, 2008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 계산시 과세소득의 측정방법에 관한 연구” 세무와 회계저널 9(3) pp167-190.

전병욱, 2009 “조세감면의 정도가 세무조사 대상기업의 선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경영학연구 38(6) pp1573-1597.

정달성·홍정화, 2013 “세무조사연도의 과세소득축소 지향적 법인세 세무조정 연구” 회계·세무와 감사 연구 55(2) pp105-144.

정성진·유상열, 2011 “세무조사 수검 전후의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가 추정세액 및 세무조사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세무와회계저널 12(4) pp307-338.

정운오·전병욱, 2010 “세무조사와 추가반응” 세무학연구 27(3) pp179-203.

정준희·장지인·양대천, 2013 “대리인문제와 비대칭적 원가행태” 회계학연구 38(1) pp321-355.

정진오·정지선, 2009 “공평과세를 위한 세무조사제도 개선방안” 조세법연구 15(1) pp46-91.

정평조·권오현, 2011 “최근 세무조사행정의 동향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조세연구 11(1) pp121-174.

창성목·연순희·이병철, 2000 "감리지적기업의 재무구조와 소유구조 특성." 국제회계연구 3 pp117-128.

최현섭, 2012 "조세회피와 재무-세무보고이익 차이에 관한 실증연구" 국제회계연구 45 pp195-218.

홍순복, 2007 "세무조사자들의 회계정보 활용과 과세재량권"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집 7(1) pp190-198.

홍정화·고병숙, 2007 "세무조사요인이 세무대리인의 조세회피성향에 미치는 영향" 상업교육연구 16 pp135-154.

Bowen, R. M., D. Burgstahler. and L. A. Daley(1987). "The Incremental Information Content of Accrual versus Cash Flows." Accounting Review(Oct), Vol. 62 : 723-747.

Brown, S. J. and J. B. Warner(1985). "Using Daily Stock Returns : The Case of Event Studies."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Mar), Vol. 14 : 3-31.

Dechow, P. M.(1994) "Accounting Earnings and Cash Flows as Measures of Firm Performance : The Role of Accounting Accruals." Journal of Accounting & Economics(Jul), Vol. 18 : 3-42.

Dechow, Patricia M., Richard G. Sloan, and Amy P. Sweeney. (1995) "Detecting earnings management." The Accounting review Vol. 70 No.2: 193-225.

Desai, M.A., and D. Dharmapala. 2006. Corporate tax avoidance and

high-powered Incentives.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79 : 145-179.

Fama, E. F., L. Fisher, M. C. Jensen, and R. Roll(1969). "The Adjustment of Stock Prices to New Informations." *International Economic Review*(Feb), Vol.10 : 1-21.

Healy, P. M. and J. M. Wahlen(1999). "A Review of The Earnings Management Literature and Its Implications for Standard Setting." *Accounting Horizons*, Vol. 13 : 365-383.

Scholes, M. S., G. P. Wilson, and M. A. Wolfson(1992). "Firms' Response to Anticipated Reductions in Tax Rates : The Tax Reform Act of 1986."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Supplement), Vol. 30 : 161-185.

Shleifer, A., & Vishny, R. W. (1997). A survey of corporate governance. *The journal of finance*, Vol. 52 No.2: 737-783.

Wilson, G. P.(1987). "The Incremental Information Content of the Accrual and Funds Components of Earnings After Controlling for Earnings." *Accounting Review*(Apr), Vol. 62 : 293-322.